

가정상담

3
2018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NEWS LETTER • ISSN1227-7568

통권 415호

법률구조를 통한
법률복지사회 구현
우리 사회의
모든 가정과 함께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트위터▷ <http://www.twitter.com/LegalAid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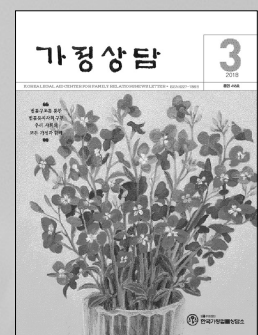


본소 교육부에서는 지난 2월 8일 비혼모 시설인 애란원에서 「한부모 가정을 위한 일일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2월 22일에는 김병후 원장이 진행하는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가 열렸다. (관련기사 28면)



법의 생활화 운동의 일환으로 본소의 법 교육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월 9일에는 영등포 보현의 집에서 노숙인 신용회복을 위한 법 교육이 진행되었다. (관련기사 29면)

- 4 • 이 달의 메시지
- 6 • 특집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60년간 상담통계(1956~2016)
- 15 • 기획연재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00년을 향해 ⑦
- 17 • 가정폭력상담실
- 22 • 인터넷 상담
- 23 • 좋은 책
핑거스미스
- 24 • 결혼과 인생(181) 만화일기
사랑 _ 장차현실
- 25 • 임상실습 소감문
- 26 • 상담소 소식
- 30 • 지부 소식
- 32 • 상담통계
- 33 • 백인변호사단 소송구조



표지글씨 | 박병호 서울대 명예교수
표지그림 | 이현혜 평생회원

이 달의 메시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사회를 위한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곽 배 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요즘 우리 사회는 신문 방송을 통해 성추문과 성희롱, 성폭행이라는 단어가 난무하고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유명 인사들의 이름이 뉴스의 한 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유명 인사들의 이름이 뉴스를 장식하면서 국민들을 놀라게 할지 예측을 불허하는 상황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러한 일들은 그동안 각계각층에서 암암리에 있어왔고 그 과정에서 많은 피해자들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새삼스러운 것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까지 피해자들은 모든 면에서 남성과 여성을 이중적 잣대로 가르는 특히 성과 관련해 무도덕하고 부도덕한 사회 전반적 관행과 관습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수치스러움과 모욕 그리고 그로인한 불이익을 참고 견딜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발전은 여성들의 의식 변화와 법적 권익 신장을 가져왔으며, 이러한 상황은 더 이상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 문제를 침묵하도록 두지 않았고, 결국은 2016년 가을 문단에서 시작된 우리 사회의 성폭력 고발은 올해 초 안태근 전 검찰국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본격 발화되어 그 불길은 문화, 예술, 종교 등 우리 사회 각 부문으로 거침없이 번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1월 7일, 미국의 유명한 토크 쇼 진행자인 오프라 윈프리가 제75회 골든 글

로브 시상식에서 평생공로상을 수상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본 그녀의 수상 관련 소식과 수상 소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미국 영화계의 거물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추문 사건에 항의하고, 영화계에 만연한 성폭력과 성차별을 규탄하는 의미로 많은 여성 참석자들과 같이 블랙 드레스를 입고 시상식에 참석한 그녀는 “여성들이 지금껏 권력을 가진 남성들에게 맞서 진실을 말하려고 하면, 아무도 그 목소리를 듣지 않았고 믿어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때가 왔다(Times up)”면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소녀들에게 “새로운 날이 다가왔음을 알리고 싶었다.”는 말로 오늘날의 상황을 상기시켰습니다. 또한 “새로운 날이 왔다는 것은 이 자리에도 있는 훌륭한 여성과 남성들이 더 이상 ‘미 투(Me Too)’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세상을 위해 싸운 덕”이라며, 동료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 사회의 ‘미 투’ 운동은 바로 결국은 더 이상 그것이 필요 없는 세상으로 가기 위한 첫 걸음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사회를 유지하는 법치주의의 근간이 되는 법원과 검찰에서, 인간의 고귀함과 존엄성을 표상하는 예술계에서 그리고 영혼과 양심의 근원을 담는 종교에 이르기까지 사회 곳곳, 성추문으로 얼룩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이 아우성들은 성범죄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어떤 식으로 피해자들의 입을 막고 일상적으로 2차 가해를 해 왔는지에 대한 절절한 반증이기도 합니다. 성희롱에서 성폭력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우리 사회 각계에 만연한 성범죄는 미소지니(Misogyny, 여성혐오)와 위계형 성범죄에까지 폭넓게 걸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런 일들이 주위의 묵인 혹은 동조 아래 공공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져 왔다는 점에서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두운 밤거리를 혼자 걸어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환한 불빛 아래 여러 동료 선 후배들의 눈길 가운데에서 벌어져 왔다는 사실이 더더욱 우리를 절망스럽게 합니다. 검찰의 고위간부가 후배 검사를 성추행할 때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여러 검사들을 생각합니다. 이운택 대표에게 안마를 하라며 후배 배우를 그에게 보낸 선배 배우들을 생각합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다’라는 말의 뜻을 우리는 압니다. 그 ‘사람다움’에 대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가정과 학교의 교육이 나와 타인을 바르게 존중하도록 가르치고 또 제대로 배우고 있는지 먼저 돌아보고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깊이 뿌리 내릴 수 있었던 우리 사회의 관습과 폐해를 우리 모두는 더 이상 용납하거나 묵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앞서 성범죄자들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제재를 통해 이러한 행동을 관행과 남자 마음으로 덮으며 피해자들을 더욱 큰 고통 속으로 밀어넣어온 사회 전반의 과오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혼돈과 혼란으로 보이는 최근 일련의 사태들이 앞으로 우리 사회가 성범죄에 대해 올바른 시각을 갖고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가정이 어떻게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는지 보여주는 역사적 현장, 그 60년의 기록

1956년 8월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개소한 이래 2016년 12월말까지 60여년간 본부의 총 상담건수는 1,547,526건이었다.

상담소에서는 상담이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는가에 따라 상담을 법률상담과 법률구조로 분류하고 있다. 가사·민사·형사문제 등에 대한 내담자의 고민을 들어주고 그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하여 내담자가 해결점을 모색하도록 도움을 주는 경우는 법률상담으로 분류하며 총 1,502,266건이었다. 법률구조에는 화해조정, 서류작성, 소송구조 등이 있는데 상담자가 적극적으로 조정과 중재를 하여 당사자들이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게 되면 화해조정으로, 내담자들에게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 소송관련 서류나 각종 신고서 작성을 대행해주면 서류작성으로, 상담 결과 내담자가 법을 잘 몰라 억울한 처지에 놓여 있으나 경제형편이 어려워 무료로 변론을 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송구조로 분류하며 이러한 법률구조는 총 45,260이었다.

초기에는 법률상담 위주였으나 2000년대 중반 들어 공익법무관과 내부 변호사를 확충하면서부터는 법률구조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60차년도인 2016년에는 한 해 동

안 71,343건의 법률상담뿐만 아니라 3,602건의 화해조정, 2,120건의 소장작성, 561건의 소송구조를 진행하였다.

한편, 상담소에서 실시되고 있는 상담은 그 방법에 따라 면접상담, 전화상담, 지상상담, 서신상담, 통신 및 인터넷상담, 순회상담, 출장상담, 1366상담 등으로 구분된다.

면접상담은 내담자들이 상담소에 직접 찾아와서 상담자와 면담을 함으로써 자신의 가정문제 및 현안이 되고 있는 법률문제 등에 대해 법률적 조언을 구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상담방법을 말하며 총 564,127건(36.5%)이었다. 전화상담은 각종 서류절차 등 비교적 간단히 답변해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전화상담은 익명성이 보장되고 편리하다는 점에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으나, 상담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직접 내담하도록 권유하고 있으며, 총 461,712건(29.8%)이었다. 지상상담은 일간신문이나 잡지, 각종 생활정보지 등에 가족법이나 상담사례 등을 기고하여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법적 궁금증을 풀어주는 상담방법으로 총 1,591건(0.1%)이었다. 서신상담은 편지나 팩스로 문의를 하는 경우 역시 편지나 팩스를 이용하여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서 총 3,980건(0.3%)이었다. 통신 및 인터

넷상담은 1997년부터 시작되었고, 내담자가 본 상담소 홈페이지 게시판에 상담 내용을 올려 답을 구하는 게시판 상담 및 포털사이트의 전문가 Q&A 등 다양한 형태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총 87,150건(5.6%)이었다. 순회상담은 각 구청의 사회복지과 및 각종 쉼터나 복지관 등에서 상담이 진행되는 것으로 총 1,675건(0.1%)이었다. 상담소에서는 인근 지역의 미혼모 보호시설, 노숙인 쉼터 등을 방문해 양육비 및 파산 상담을 진행하는 등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출장상담은 서울시청 시민상담실 등에서 임대차나 주택관련 문제 등을 주로 상담하는 것으로 총 360,355건(23.3%)이었고, 1366상담은 2006년 1월 1일부터 여성가족부 및 서울시에서 위탁받아 진행한 24시간 긴급 전화상담으로 총 66,936건(4.3%)이었다.

아래에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상담내용이 비교적 자세하게 드러나는 면접상담에 대해서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대별 주요발견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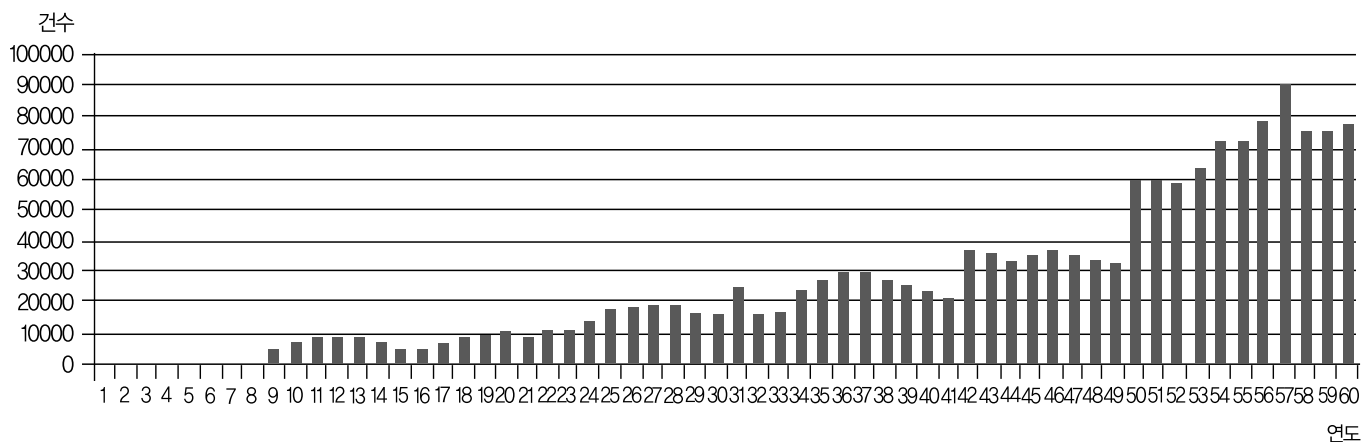
- 50~60년대 : 사실혼 비율 높고, 외도, 폭력 주장 많아
- 70년대 : 6.25, 베트남전, 중동파견, 파독 광부 등 사회상 반영되어 생사불명 비율 높아
- 80년대 : 남편 폭력, 아내 가출 비율 점점 높아져

- 90년대 : 남편 폭력 주장하는 아내 비율 최고조에 달해
- 2000년대 : 경제문제로 인한 이혼 늘고, 아내의 부당대우, 남편의 가출 많이 호소해
- 2010년대 : 파산, 상속 등 재산 관련 문제, 애정상실, 대화단절 등 추상적인 사유 증가해

면접상담 분석

- 가사사건 85.5%, 민사사건 12.0%, 형사사건 2.3%, 기타사건 0.2% 순
- 이혼 43.0%, 부부갈등 19.1%, 남녀관계 4.3%, 사실혼 해소 4.0% 순
-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 이혼 후 자녀 복리 관련 상담 꾸준히 증가
- 호주제 폐지되면서 친양자 및 성변경 관련 상담 증가
- 고령화시대 접어들면서 부모 부양 문제로 가족 간 갈등 겪는 가정 증가
- 성년후견제도 도입되면서 요보호자들에 대한 후견 상담 건수 폭발적 증가
- 경제사정 악화되면서 부모 빚에 대한 상속포기 및 부모 재산 기대하는 유언상속 상담 증가
- 글로벌 경제 위기 후 파산 및 개인회생 상담 증가
- 혼인빙자간음죄, 간통죄 폐지로 관련 상담 감소

연도별 상담총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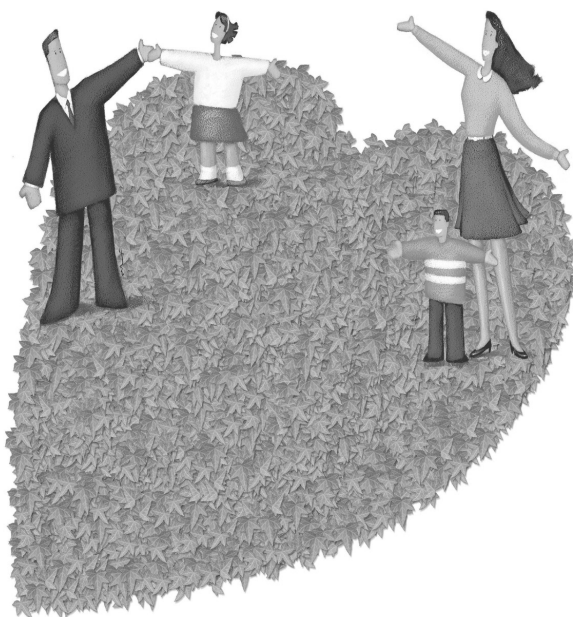


연대별 분석

50~60년대

1956년 본 상담소가 처음 개소했을 당시 상담소를 찾아가정문제를 상담하는 내담자는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여성 내담자의 비율은 96.8%였고, 남성 내담자의 비율은 3.2% 정도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1964~65년에 남성 내담자의 비율은 20%이상으로 급증하였으며 1967~68년에는 28.0%로 최고치를 나타냈다. 이러한 현상은 이혼상담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1968~69년에 남성 내담자의 비율은 30.2%로 전체 기간 중 남성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0~60년대에는 사건내용면에서 다른 연대에 비해 사실혼 해소상담의 비율이 높았는데(50~60년대 11.1%, 70년대 6.7%, 80년대 4.6%, 90년대 3.9%, 2000년대 2.5%, 2010년대 1.3%), 혼인신고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자리 잡지 못하고 또 혼인신고라는 법적 절차의 부담으로 법률혼에



이르지 않은 사실혼관계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부양(50~60년대 3.9%, 70년대 1.6%, 80년대 1.5%, 90년대 1.4%, 2000년대 0.7%, 2010년대 0.8%)에 관한 상담 비율도 높았으며, 간통(50~60년대 4.7%, 70년대 1.0%, 80년대 1.2%, 90년대 0.7%, 2000년대 0.3%, 2010년대 0.1%)과 혼인빙자간음(50~60년대 1.8%, 70년대 1.0%, 80년대 0.8%, 90년대 0.3%, 2000년대 0.2%, 2010년대 0.0%)과 같은 형사사건의 비율도 높았다.

50~60년대 이혼사유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에는 6호(43.5%), 2호(22.7%), 1호(21.5%) 순으로, 여성의 경우에는 1호(45.7%), 3호(27.8%), 6호(17.7%) 순으로 상담이 많았다.

또한 다른 연대에 비해 남녀 모두 1호(부정한 행위)와 4호사유(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호사유 남성 50~60년대 21.5%, 70년대 18.9%, 80년대 12.4%, 90년대 14.3%, 2000년대 14.8%, 2010년대 11.2% / 여성 50~60년대 45.7%, 70년대 39.8%, 80년대 23.8%, 90년대 20.0%, 2000년대 19.5%, 2010년대 15.9% // 4호사유 남성 50~60년대 1.4%, 70년대 1.0%, 80년대 0.7%, 90년대 0.6%, 2000년대 0.3%, 2010년대 0.2% / 여성 50~60년대 1.4%, 70년대 0.2%, 80년대 0.2%, 90년대 0.2%, 2000년대 0.1%, 2010년대 0.1%). 배우자의 부정이라는 직접적인 갈등, 그리고 배우자 및 직계 가족과의 갈등이 주요 문제로 대두되었다는 점에서 부첩관계를 용인하고, 대가족 생활이 일반적이었던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70년대

70년대에는 부부갈등 상담(50~60년대 5.4%→70년대 21.8%)이 급증하여 이혼상담 다음으로 많았으며, 다른 연대에 비해 남녀관계(50~60년대 9.2%, 70년대 9.5%, 80년대 6.8%, 90년대 3.5%, 2000년대 1.5%, 2010년대 0.4%) 및 민사절차 등 민사사건(50~60년대 13.6%, 70년대

19.4%, 80년대 15.2%, 90년대 12.1%, 2000년대 6.2%, 2010년대 8.8%) 전반에 대한 상담 비율도 높았다.

70년대의 이혼사유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6호(42.9%), 2호(27.6%), 1호(18.9%) 순으로 그 순위는 50~60년대와 변함이 없었으나, 2호사유(악의의 유기)(50~60년대 22.7%→70년대 27.6%)로 인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또한, 여성의 경우는 6호사유(50~60년대 17.7%→70년대 27.7%)가 증가하여 1호(39.8%), 6호(27.7%), 3호(21.8%) 순으로 그 순위가 변화되었다(50~60년대는 1호, 3호, 6호 순).

한편, 다른 연대에 비해 남녀 모두 5호사유(3년이상 생사 불명)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남성 50~60년대 4.8%, 70년대 6.2%, 80년대 1.9%, 90년대 1.3%, 2000년대 0.5%, 2010년대 0.4% / 여성 50~60년대 1.3%, 70년대 2.6%, 80년대 0.6%, 90년대 0.6%, 2000년대 0.5%, 2010년대 0.3%). 이는 6.25 및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 배우자가 실종된 후 십수년이 흘러도 생사가 확인되지 않자 돌아오리라는 희망을 포기하고 이혼을 결심한 이들이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80년대

80년대에는 70년대에 비해 면접초상담건수가 약 2.3배 증가하였다(53,398건→123,801건). 사건내용별로는 이혼(70년대 33.3%→80년대 39.9%), 부부갈등(70년대 21.8%→80년대 23.5%), 재산상속(70년대 1.0%→80년대 2.1%)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가사사건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민사사건 중에는 채권채무(70년대 0.8%→80년대 1.6%)에 관한 상담 비율이 2배 증가하였다.

한편 70년대에 비해, 이혼상담건수가 약 2.8배 증가하였으며(17,754건→49,439건), 이혼상담을 한 여성 내담자의 비율(70년대 74.1%→80년대 79.3%)도 증가하였다.

이혼사유에 있어서는, 남성의 경우 6호(43.6%), 2호(35.2%), 1호(12.4%) 순으로 70년대와 변함이 없으나, 2호사유로 인한 상담(50~60년대 22.7%, 70년대 27.6%, 80년대 35.2%)이 계속 증가하였다. 한편 여성의 경우는 6호사유(70년대 27.7%→80년대 34.9%)와 3호사유(70년대 21.8%→80년대 31.3%)가 증가하여 6호(34.9%), 3호(31.3%), 1호(23.8%) 순으로 그 순위가 변화되었다.

다른 연대에 비해서는 남성의 경우 2호사유(악의의 유기)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50~60년대 22.7%, 70년대 27.6%, 80년대 35.2%, 90년대 29.0%, 2000년대 19.1%, 2010년대 21.0%). 그런데 상담을 통해 보면 아내의 가출을 문제 삼은 남편의 경우 아내에 대한 폭력이 선행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아내의 가출 증가는 남편의 폭력 증가와 연관이 있다 할 것이다.

90년대

90년대에는 이혼상담이 급증하여 전체 면접상담의 과반수를 넘었다(80년대 39.9%→90년대 50.9%). 또한, 면접상담에서 여성의 비율(80년대 75.5%→90년대 80.6%)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혼상담의 경우에도 여성의 비율(80년대 79.3%→90년대 85.1%)이 크게 증가하였다.

90년대의 이혼사유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그 순위는 6호(45.2%), 2호(29.0%), 1호(14.3%) 순으로 80년대와 동일하나, 6호(80년대 43.6%→90년대 45.2%)와 1호(80년대 12.4%→90년대 14.3%)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여성의 경우에도 80년대와 동일하게 6호(37.9%), 3호(33.5%), 1호(20.0%) 순으로 나타났으나, 6호(80년대 34.9%→90년대 37.9%)와 3호(80년대 31.3%→90년대 33.5%)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한편, 여성의 경우 다른 연대에 비해 3호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50~60년대 27.8%, 70년대 21.8%, 80년대 31.3%, 90년대 33.5%, 2000년대 31.7%, 2010년대

28.8%). 이는 남성의 폭력 자체가 증가했다기보다는 폭력에 대한 여성들의 인식이 달라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과거에는 여성들이 남편의 폭력도 무조건 참고 견뎌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으나 시대가 변함에 따라 90년대 들어서는 폭력이 부당하다는 것을 인식한 후 무조건 참기보다는 이혼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대응하려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2000년대

2000년대에는 이혼상담이 더욱 증가하여 51.7%에 달하였으며(90년대 50.9%), 채권채무(90년대 0.8%→2000년대 2.8%)에 관한 상담도 90년대에 비해 3.5배 가량 증가하였다. 채권채무에 관한 상담 증가는 90년대 후반에 시작된 외환위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제 문제는 가정 내 문제로 전이되어 결과적으로 2000년대에 이혼상담의 증가를 불러온 것으로 보인다. 즉, IMF 후에도 불황이 계속되자 경제문제를 호소하며 이혼상담을 해온 이들이 많았다. 한편, 이혼상담의 경우 2000년대 들어서 여성의 비율(80년대 79.3%, 90년대 85.1%, 2000년대 86.6%)이 더욱 증가하였다.

2000년대의 이혼사유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그 순위는 6호(53.0%), 2호(19.1%), 1호(14.8%) 순으로 90년대와 동일하나, 6호(80년대 43.6%, 90년대 45.2%, 2000년대 53.0%)와 1호(80년대 12.4%, 90년대 14.3%, 2000년대 14.8%)의 비율이 더욱 증가하였다. 여성의 경우에도 90년대와 동일하게 6호(38.5%), 3호(31.7%), 1호(19.5%) 순으로 나타났고, 6호(80년대 34.9%, 90년대 37.9%, 2000년대 38.5%)의 비율이 더욱 증가하였다.

한편, 다른 연대에 비해 남성의 경우 3호(50~60년대 6.1%, 70년대 3.4%, 80년대 3.6%, 90년대 7.0%, 2000년대 11.0%, 2010년대 9.8%)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IMF를 겪으면서 가정경제의 위협을 느낀 여성들이 2000년대 들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시

작하였고, 이에 따라 가정 내에서 여성들의 목소리가 커져 자 남성들은 아내가 자신을 홀대한다며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2010년대

2010년대에는 2000년대에 비해 이혼상담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전체 상담 내용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2000년대 51.7%→2010년대 39.1%).

2010년대의 이혼사유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그 순위는 6호(57.5%), 2호(21.0%), 1호(11.2%) 순으로 2000년대와 동일하나, 6호(80년대 43.6%, 90년대 45.2%, 2000년대 53.0%, 2010년대 57.5%)의 비율이 더욱 증가하였다. 여성의 경우에도 2000년대와 동일하게 6호(43.5%), 3호(28.8%), 1호(15.9%) 순으로 나타났고, 6호(80년대 34.9%, 90년대 37.9%, 2000년대 38.5%, 2010년대 43.5%)의 비율이 더욱 증가하였다.

남녀 모두 과거에는 배우자의 외도나 가출, 배우자 또는 배우자 부모로부터의 폭행, 내 부모에 대한 무시·모욕 등과 같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혼을 고려하는 경향이 강했으나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한 갈등들이 대두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문제들에 대해서도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이혼을 결심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이는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유언·상속에 관한 상담 비율이 2000년대에 비해 2.9배 증가하였고, 연대별로 살펴보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50~60년대 2.0%, 70년대 1.0%, 80년대 2.1%, 90년대 2.5%, 2000년대 2.4%, 2010년대 6.9%). 또한, 파산에 관한 상담도 2000년대에 비해 6.4배 증가하였다(2000년대 1.0%→2010년대 6.4%).

면접상담 분석

가사사건의 비율이 85.5%로 가장 많고

이혼, 부부갈등, 남녀관계, 사실혼해소 순으로 상담 많아
친권·양육권, 양육비 등

이혼 후 자녀 복리 관련 상담 증가

고령화시대 접어들면서

부모 부양, 성년후견 등 상담 증가

경제사정 악화로 유언·상속, 파산 상담 증가

지난 60여년간 본 상담소를 직접 방문한 내담자 490,031명(총 면접상담자 564,127명에서 1~43년 재담자 71,164명, 자녀·노인상담자 2,932명 제외)을 성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남성 내담자는 127,501명(26.0%), 여성 내담자는 362,530명(74.0%)으로, 여성의 비율이 약 2.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대별로 살펴보면 남성 대비 여성의 비율이 80년대까지는 3.1배(남성 24.5%, 여성 75.5%)정도였으나 90년대 들어서는 4.2배(남성 19.4%, 여성 80.6%)에 달하였고, IMF 체제 시작기인 97년에는 5.1배(남성 16.3%, 여성 83.7%)를 넘어섰다. 그러나 이후부터는 남성의 수가 증가하여 2010년대에는 1.8배(남성 35.9%, 여성 64.1%)로 차이가 줄었고,

2016년에는 1.4배(남성 41.4%, 여성 58.6%)로 남녀 비율 차이가 더욱 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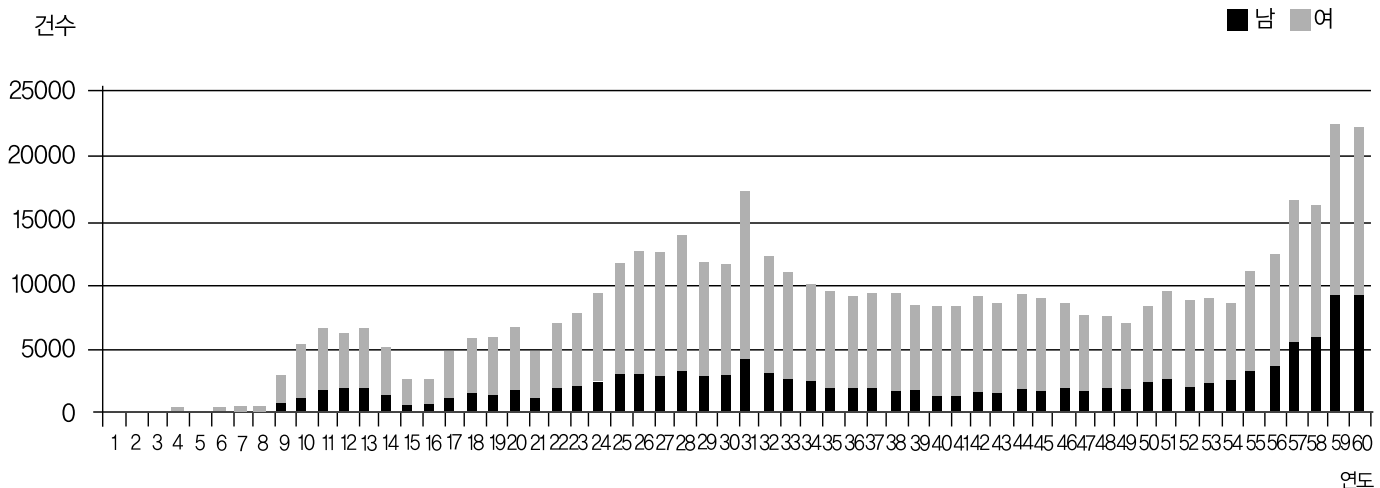
남성 내담자의 증가 이유로는 과거에 비해 남성의 사회적 혹은 가정 내 위상이 약해진 점과 자존심이나 자각지심으로 남에게 자신의 문제를 내놓기 꺼려했던 과거의 아버지, 남편들과는 달리 자기의 문제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남성들의 의식이 변화한 점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면접상담의 내용을 살펴보면, 가사사건이 419,126건(85.5%), 민사사건이 58,993건(12.0%), 형사사건이 11,153건(2.3%), 기타사건이 759건(0.2%)으로 가사사건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가사사건

가사사건 중에서는 이혼(43.0%, 210,764건)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부부갈등(19.1%, 93,779건), 남녀관계(4.3%, 21,075건), 사실혼해소(4.0%, 19,565건), 유언·상속(3.2%, 15,490건), 친자관계(2.3%, 11,115건), 부양관계(1.3%, 6,571건)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면접 상담 건수(남녀별)



이혼상담은 내담자가 이혼의사를 가지고 이혼사유나 절차,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이나 양육권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상담하는 것으로 매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연대별로 살펴보면, 전체 면접상담 중 50~60년대에는 39.3%, 70년대에는 33.3%, 80년대에는 39.9%, 90년대에는 50.9%, 2000년대에는 51.7%, 2010년대에는 39.1%로 2000년대 최고 비율을 나타내다 2010년대에 다소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면접상담 중에서는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부갈등상담은 결혼생활이 완전히 파탄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불화가 계속되어 갈등상태에 있는 부부의 상담을 말하는데 매해 이혼상담 다음으로 비율이 높았다(50~60년대 5.4%, 70년대 21.8%, 80년대 23.5%, 90년대 21.0%, 2000년대 21.1%, 2010년대 13.7%). 이들은 해결점을 찾지 못할 경우 이혼으로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잠재적인 이혼 당사자로 볼 수 있다.

2007년 12월부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이에 관한 가정법원의 심판 정본을 제출해야만 협의이혼이 가능해짐에 따라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등 이혼 후 자녀의 복리 관련 상담 건수가 증가하였다. 제도 시행 전년도인 2006년과 비교해 볼 때 친권·양육권은 2006년 156건에서 2016년 524건으로, 양육비는 2006년 112건에서 2016년 928건으로 증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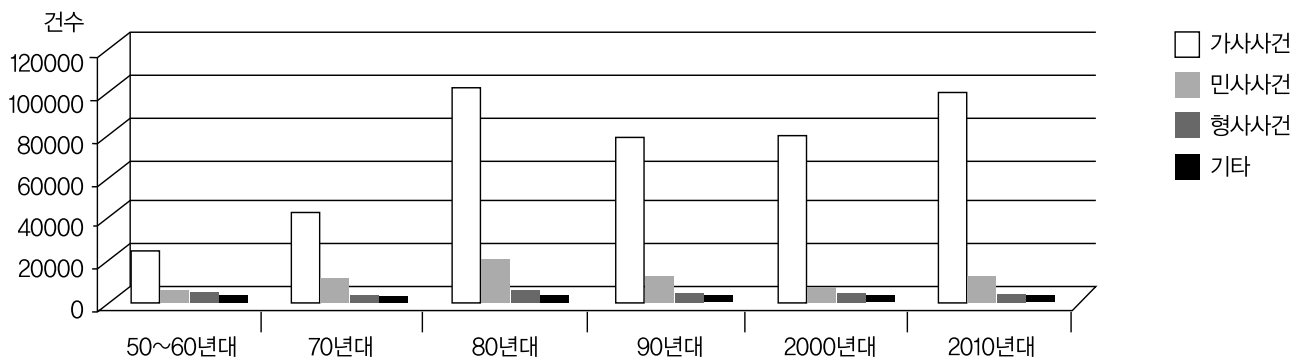
였다. 또한 양육비의 경우 2009년 11월 양육비직접지급명령 등 이행확보를 위한 제도들이 도입되면서 양육비 이행을 적극적으로 청구하고자 하는 상담이 더욱 급격히 증가하였고, 내담자들은 제도 신설 이전에 비해 과거 및 장래 양육비에 대한 구체적인 청구 방법에 관하여 자세히 문의해왔다.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2008년부터는 상담통계 분석에 있어 호적관계 항목이 가족관계등록부로 변경되었고, 친양자와 성변경 항목이 추가되었다. 2008년 친양자 제도와 성변경 제도가 신설된 이후 2016년까지 친양자에 관해서는 480건, 성변경에 관해서는 956건의 상담을 진행하였다.

친부모의 동의만으로 쉽게 미성년 자녀를 입양할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2013년 7월부터 법원이 양부모의 환경이나 입양 동기 등을 엄격히 심사해 입양 허가를 내주어야만 미성년자 입양이 가능해짐에 따라 미성년 입양에 대한 상담 건수도 크게 증가하였다(2013년 96건, 2014년 154건, 2015년 321건, 2016년 323건).

고령화시대로 접어들면서 부모에 대한 부양 문제로 가족 간 갈등을 겪는 경우도 2010년대 들어서 급격히 증가하였다(2010년 60건, 2011년 79건, 2012년 116건, 2013년 134건, 2014년 145건, 2015년 158건, 2016년 183건). 내담자

면접 - 연대별 사건내용별



본부·지부 상담 사건 총계

구 분 연 도	지 부					본 부·지 부 합 계				
	소송전구조		소송 구조	법률 상담	상담 총건수	소송전구조		소송 구조	법률 상담	상담 총건수
	조정 (화해 조정)	대서 (소장 등 서류작성)				조정 (화해 조정)	대서 (소장 등 서류작성)			
1~31(1956~1987)	1966년 지부개소			22,582	22,582	1,662	145	47	277,178	279,032
32 (1988)	－	－	－	21,917	21,917	126	10	5	37,417	37,558
33 (1989)	－	－	－	29,246	29,246	320	5	20	44,879	45,224
34 (1990)	－	－	－	34,629	34,629	153	5	22	58,460	58,640
35 (1991)	－	－	－	41,267	41,267	174	3	30	67,790	67,997
36 (1992)	－	－	－	49,405	49,405	175	－	31	78,111	78,317
37 (1993)	313	863	2	61,071	62,249	680	867	42	90,909	92,498
38 (1994)	258	1,048	－	68,031	69,337	646	1,066	21	94,633	96,366
39 (1995)	218	1,163	－	73,883	75,264	435	1,196	22	98,523	100,176
40 (1996)	235	1,331	－	73,900	75,466	368	1,364	29	96,660	98,421
41 (1997)	470	1,446	7	73,296	75,219	574	1,534	31	94,480	96,619
42 (1998)	417	1,546	3	93,422	95,388	528	1,606	24	129,341	131,499
43 (1999)	359	1,221	11	103,350	104,941	573	1,303	36	138,747	140,659
44 (2000)	309	1,144	21	106,445	107,919	845	1,274	51	138,746	140,916
45 (2001)	170	1,040	20	104,427	105,657	565	1,155	50	138,384	140,154
46 (2002)	926	1,052	12	92,695	94,685	1,490	1,155	41	128,320	131,006
47 (2003)	906	951	18	88,481	90,356	1,414	1,098	61	122,150	124,723
48 (2004)	1,275	877	13	76,295	78,460	2,031	1,062	83	108,784	111,960
49 (2005)	1,859	876	214	72,698	75,647	2,652	1,056	304	103,692	107,704
50 (2006)	2,008	994	257	72,134	75,393	3,300	1,179	405	129,523	72,391
51 (2007)	2,020	1,285	317	78,300	81,922	4,017	1,503	545	134,734	140,799
52 (2008)	2,446	1,196	370	78,049	82,061	3,674	1,397	604	134,065	139,740
53 (2009)	4,071	1,035	485	77,780	83,371	5,262	1,256	785	138,958	146,261
54 (2010)	4,752	1,096	504	75,885	82,237	6,078	1,252	851	145,808	153,989
55 (2011)	6,063	1,221	499	77,855	85,638	7,351	1,427	876	147,682	157,336
56 (2012)	5,324	1,197	568	73,225	80,314	8,255	1,583	966	147,893	158,697
57 (2013)	5,340	914	662	67,675	74,591	8,364	1,705	1,067	153,861	164,997
58 (2014)	5,110	816	667	72,396	78,989	8,114	1,607	1,106	143,060	153,887
59 (2015)	9,226	904	680	70,941	81,751	12,983	2,563	1,258	139,415	156,219
60 (2016)	8,262	504	537	63,072	72,375	11,864	2,624	1,098	134,415	150,001
합 계	62,337	25,720	5,867	2,094,352	2,188,276	94,673	34,000	10,511	3,596,618	3,735,802

가 자녀인 경우에는 다른 형제들이 부모를 외면하는 경우 부양의무를 나눠 질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이 대부분이었다. 내담자가 노부모인 경우에는 쇠약하고 경제적으로 곤궁해진 자신을 자녀들이 돌보지 않는다는 호소와 자녀가 있으면 정부로부터 생활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해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자녀들을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의들이 많았다.

또한, 한정치산, 금치산제도를 대체하는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2013년부터 상담통계 분석에 성년후견 항목이 추가되었고 2016년까지 3년간 1,624건의 상담을 진행하였다. 내담자들은 치매나 질병, 판단력 부족 등으로 인해 법률행위를 하기 어려운 부모나 배우자, 형제, 자매, 자녀의 후견인 선임에 대해 문의해 왔다. 내담자들이 상담해온 피후견인이 될 사람들은 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상속 등을 통해 장래에 재산을 받을 예정인 경우가 많았다. 내담자들은 가족들과 협의 후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가족들 간에 협의가 안 되어 다른 사람이 후견인이 되는 것을 막으려고 온 경우도 있었다.

유언·상속에 관한 상담 비율도 2010년대에 들어 급격히 증가하였다(50~60년대 2.0%, 70년대 1.0%, 80년대 2.1%, 90년대 2.5%, 2000년대 2.4%, 2010년대 6.9%).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부모의 재산 상속에 대한 기대로 자신의 상속분을 알고자 하는 경우도 있었고, 부모 자식 간 혹은 형제들 간 상속 재산에 관한 다툼을 둘러싼 문의와 유류분에 대한 문의도 많았다. 또한 사후에 남겨질 배우자를 위해 배우자에게만 재산을 남길 수 있는 유언방식이나 빚줄을 넘어서 특정 단체에 전액을 기부하는 방법 등을 알고자 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부모나 형제, 자녀들이 사후 빚을 남긴 경우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에 대한 상담도 많았다.

민사사건

민사사건 중에서는 민사기타(5.6%, 27,445건)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민사절차(3.0%, 14,758건), 파산(1.6%, 7,824건), 채권·채무(1.4%, 6,767건) 순으로 나타났다.

민사사건 중 채권채무에 관한 상담의 경우 90년대에는 0.8%에 지나지 않았으나 2000년대에는 2.8%로 크게 증가하였고, 파산에 관한 상담도 2010년대에 6.4%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파산상담은 2008년에 435건으로 시작하여 2016년에는 954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90년대 말 시작된 외환위기에 따른 경제적 곤란이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배우자가 자신의 명의로 된 카드나 사채를 몰래 사용해 파산에 이르게 되었거나 사업실패와 실직 등으로 인해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충당하다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우도 있었다.

형사사건

형사사건 중에서는 간통(0.9%, 4,431건)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혼인빙자간음(0.5%, 2,467건), 형사기타(0.5%, 2,503건), 폭행·상해·사기(0.2%, 864건)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9년에 혼인빙자간음죄(50~60년대 1.8%→2010년대 0.0%)가, 2015년에 간통죄(50~60년대 4.7%→2010년대 0.1%)가 각각 폐지됨에 따라 이후 면접상담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김진영 상담위원



기/획/연/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00년을 향해 ⑦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민국 법률구조의 역사*

1972년 직장인을 위한 야간상담 개설, 본격적으로는 1987년부터

1972년 11월 직장인을 위한 야간상담 개설

1975년 8월 이태영 소장, '라몬 막사이사이 상' 사회지도부문 수상

상담소는 1972년 11월 1일부터 야간상담을 개설하여 오후 5시까지 하던 상담을 오후 8시까지로 연장했다. 주간상담 만으로는 상담소 방문을 희망하는 모든 여성들을 골고루 상대할 수 없고, 특히 직장여성들은 상담소 이용에 불편이 많을 것이라는 판단이 야간상담을 실시하게 된 주된 동기였다. 또한 이태영 소장이 해외여행 중 덴마크에서 야간상담이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있음을 발견한 것도 계기가 되었다.

한 사람의 내담자라도 더 많이 받아들이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이 야간상담은 그러나 조금 시행 후 일단 중단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첫째, 예상했던 만큼 이용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상담소의 위치가 시내 중심으로부터 다소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압박으로 야간상담에 대한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던 탓이다. 둘째로는 전세로 사용하고 있던 상담소 건물이어서 야간에 이용하기가 불편한 점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상담소의 독자적인 건물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해결되기 어려운 것이었다.

따라서 야간 상담은 상담소 건물인 백인회관이 완공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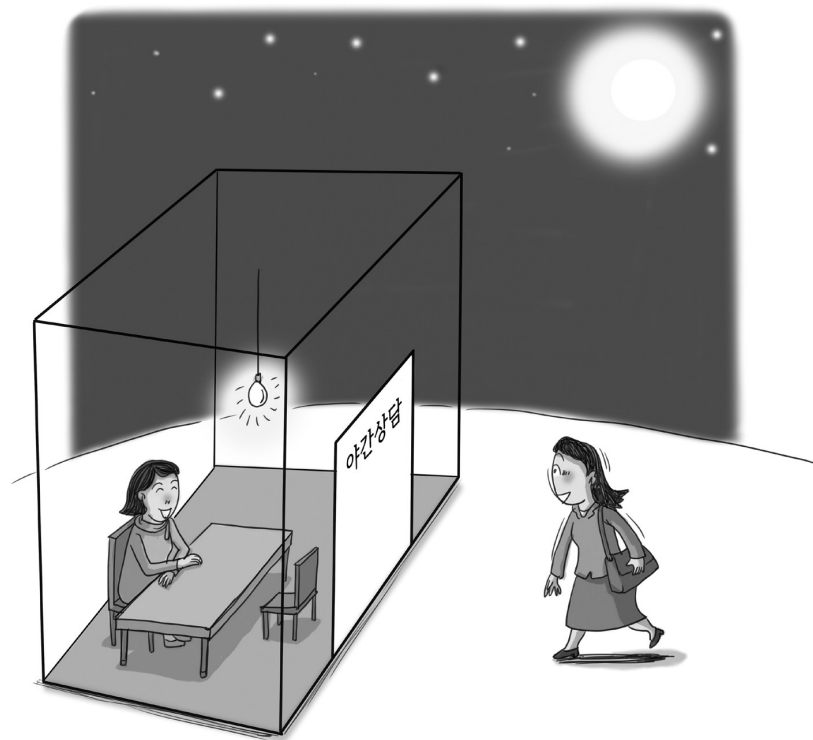
* 상담소는 지난 2016년을 창립 60주년의 해로 보내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구조 기관으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백년을 향해 나아간다는 전망을 세운 바 있다. 이러한 전망의 토대로 삼고자 상담소의 역사를 바로 알고 널리 알리기 위해 상담소의 연대기를 연재한다. 상담소는 지난 2009년 「변민하는 이웃과 함께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50년사」를 펴낸 바 있으며, 이 연재는 이를 기초자료로 하였다.

상담소의 다양한 사업들이 어느 정도 정비된 이후 1979년 발족한 백인변호사단의 협조를 얻어 198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러한 '직장인을 위한 야간상담'이 제대로 자리를 잡기까지는 자원한 변호사들의 헌신적인 봉사가 가장 큰 바탕이 되었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작된 야간상담은 내담자들의 큰 호응을 얻어 현재는 매주 월요일 저녁, 백인변호사단에서 자

원한 변호사들이 차례로 참여하는 가운데 상담소의 주요한 사업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다.

1987년부터 본격화되었지만 이미 1970년대 초반에 내담자의 편의와 요구에 부응하여 야간상담을 기획했던 상담소는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우리 사회 최초의 법률구조기관다운 면모를 보여주었던 것이다.



본소의 야간상담이 제대로 자리 잡기까지 초기에 큰 역할을 한 임재연 변호사(본소 이사)와 현재 백인변호사단 소속 변호사들의 헌신적인 야간상담 활동 모습(좌 천정환 변호사 우 전성배 변호사)





부모의 가정폭력은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도 깊은 상처와 불신을 남겨

사건번호 2016바1*** 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5회, 전화상담 1회,
교육강좌 4회,
피해자(아내) 개별상담 1회, 전화상담 2회,
부부상담 1회, 부부집단상담 8회, 부부 캠프 1회 등
총 23회 실시

상담기간

2017. 2. 7. ~ 2017. 8. 10.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와 결혼한 지 30년 되었으며 부부 사이에 1남1녀(31세, 29세)가 있다. 행위자는 동호회의 집행부로 일하면서 집행부의 일원이었던 여성과 사적 만남을 가졌던 일로 부부갈등이 지속되어오던 중 2016년 7월 사건당일, 피해자가 행위자를 의심하면서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보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에 걸쳐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딸의 얼굴을 수회 폭행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으며 서울가정법원에서 6

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소에 상담위탁 되었다.

행위자는 1년 전 부정행위를 피해자와 자녀가 알게 된 이후 동호회를 그만두었고 피해자의 용서도 받았는데 피해자가 반복해서 그 일을 거론하여 갈등이 심해지던 터에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성실한 남편이자 아버지였던 행위자의 부정행위로 심한 우울감을 경험했다고 하면서 부정행위 발각 이후 다들 때면 폭행이 있었지만 가정을 유지하고 싶어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이었는데 이번에는 딸이 신고를 하였다. 그리고 부정행위가 계속되는 것 같아 이혼을 요구하였지만 행위자가 반대하여 이혼결심은 일단 유보한 상태였다.

행위자는 상담 초기에는 6개월이라는 상담기간에 부담감을 표출하고 피해자와 함께 상담을 받는 것에도 거부감을 보였다. 그러나 상담이 진행될수록 서로의 마음과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고 상담과정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도 같이 상담에 참여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의 시간을 가진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종결상담 시 피해자는 행위자가 상담을 받으면서도 몇 번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의 집에 찾아갔는데 최근 두 달간은 가지 않았다고 하면서 행위자를 포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행위자가 원래 순하고 성실하여 행위자를 믿으려고 하는데

배신의 경험으로 자꾸 의심이 간다고 하면서 앞으로는 행위자를 전적으로 믿겠다고 하였다. 다만 자녀들이 감정적으로 행위자를 전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데 행위자의 노력이 계속된다면 자녀들의 신뢰도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행위자는 상담기간이 너무 길었지만 상담을 통하여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특히 자신과 피해자 사이에는 믿음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향후 지속적인 노력을 다짐하였다.

사건번호 2016버2***폭행/2016버2***폭행(병합)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8회, 전화상담 3회,
교육강좌 6회, 음주문제상담 6회,
집단상담 8회,
피해자(아내) 개별상담 2회, 전화상담 5회
부부상담 1회, 부부집단상담 3회 등 총 42회 실시

상담기간

2017. 2. 7. ~ 2017. 7. 27.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와 결혼한 지 50년 되었으며 부부 사이에 3남(45세, 42세, 40세)이 있다. 부부는 10여 년 전부터 각방을 쓰며 대화 없이 남남처럼 지내왔는데, 행위자는 2016년 8월 사건 당일, 피해자가 집을 자주 비우고 자신에게 소홀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입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물고, 목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한차례 때리고 발로 머리 부위를 3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하였으며, 같은 해 11월 사건당일에는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수회 폭행하고 발로 등 부위를 수회 밟는 폭행을 하여 두 사건 병합으로 서울가정법원에서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소에 상담위

탁 되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도 함께 상담을 받으라는 결정을 하였다.

행위자는 초상담에서 자신이 일을 그만두고 집에 있게 되면서부터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대화도 하지 않았으며, 일을 다닌다고 밥도 해주지 않고, 돈은 혼자 쓰고 다녔으며, 가사는 자신이 다했다고 불만을 표출하였다. 이혼하고 싶지만 이혼하려면 집을 나누어야 하는데, 피해자는 재산분할로 받은 돈을 자녀들에게 다 주고 빈손이 될 가능성이 높아 차라리 이대로 대화 없는 부부로 지내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와는 대화를 하고 싶지도, 상담을 함께 하고 싶지도 않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자신도 일을 하면서 돈을 같이 모았는데 행위자가 집을 자기 단독명의로 하고 임대료를 독점하는 등 경제적 폭력을 하였으며 자신을 배우자로 존중해주지 않아 갈등이 생겼다고 하면서 이제는 더 참을 수 없어 이혼을 결심하였고 이혼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하였다.

행위자는 음주기회가 잦았기에 음주문제상담을 통하여 음주문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기회를 갖도록 하였고, 이후에는 부부가 함께 부부집단상담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부부집단상담에서 행위자는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 비난하였다고 반감을 표출하였고, 진행자의 통제를 따르지 않는 등 태도가 불량하여 부부집단상담을 중단하였다. 부부상담 결과 두 사람이 각자 숙고할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이후에는 분리하여 상담을 진행하였다. 다만 행위자는 임대료 중 일정액을 피해자에게 주도록 하였다. 피해자는 상담이 진행 중인 4월에 이혼 및 위자료 5천만원, 집의 절반가액을 재산분할로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하였지만, 집의 명의를 공동명의로 해주면 소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였다. 그러나 행위자는 집의 명의를 공동명의로 할 생각은 없고 지금은 이혼할 때도 아니라는 등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고집하였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행위자도 이혼에는 동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은 인정할 수 없다면서 소송에 대응하였다. 안타까웠지만 부득이 법원의 결정을 구하도록 하고 상담을 종결하였다.

사건번호 2016버1***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5회, 전화상담 3회,
음주문제상담 6회, 집단상담 8회,
피해자(아내) 전화상담 2회
등 총 24회 실시

상담기간

2017. 2. 1. ~2017. 8. 25.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와 결혼한 지 26년 되었으며 부부 사이에 1남1녀(23세, 21세)가 있다. 부부는 성격차이와 의사소통의 문제로 갈등이 있었는데 행위자는 2016년 5월 사건당일, 술에 취하여 피해자 및 딸과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평소 행위자가 술을 마시고 하는 행동을 싫어하는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며 피하자 식탁 주위에 있던 물뿌리개, 생수병, 소스통 등을 거실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가 방에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물티슈팩을 던져서 왼쪽 허벅지에 맞는 등 폭행을 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고 서울가정법원에서 6개월간 보호관찰 보호처분과 상담위탁 보호처분 결정을 받고 본소에 상담위탁 되었다.

행위자는 5년 전 지방근무를 할 때부터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졌고, 피해자와는 성격이 잘 맞지 않아 자주 다투었는데, 폭력으로 인한 신고는 두 번째이고 보호처분은 처음이었다. 초상담시 특별히 상담의 목표로 정하고자 하는 것은 없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가족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행위자의 소통방식, 특히 음주를 한 상태에서만 대화를 시도하는 점을 갈등요인으로 꼽았다. 또한, 사건 이후 부부 대화가 거의 단절되었는데 그 원인을 피해자가 신고를 했다는 사실에 대한 행위자의 분노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피해자는 부부가 이전처럼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는 등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였고, 행위자 역시

궁극적으로는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부부에게 신고 자체에 대한 응어리에서 원인을 찾기보다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각자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점검하고 부부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당부하였다.

행위자는 상담 중기부터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에서 지냈지만 상담에 성실하게 참여하였다. 행위자는 처음에는 상담을 그저 법적 제재를 이행한다는 마음으로 참여하였지만 음주문제상담이나 집단상담에서 구성원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이야기도 나눌 기회를 가지면서 상담위탁 처분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사건의 단면에 머무르기보다는 총체적인 결혼생활을 종합적으로 볼 기회가 되어 좋았고, 이를 통하여 자신이 피해자에게 평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자신의 반응이 시원치 않자 도중에 포기하였고 결국 부부간 의사소통이 잘 되지 못하였는데, 자신은 술이라도 마셔야 피해자에게 말을 건넸고 피해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전체 맥락을 이해하였다. 행위자는 피해자와의 대화단절 원인을 잘 정리하였고 해결방법도 생각하였지만 실천에는 다 이르지 못한 상태였다. 피해자는 행위자와 대화가 원활하지 않은 점은 여전하지만 행위자가 상담을 받으면서 음주 횟수와 정도는 감소하는 변화를 보였다고 하였고, 폭력이 반복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이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장차 행위자가 배려심을 갖게 되고 부부간 의사소통도 잘 될 것으로 기대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사건번호 2016버1***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4회, 집단상담 8회,
피해자(아내) 전화상담 1회 등 총 13회 실시

상담기간

2017. 2. 27. ~ 2017. 9. 8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와 혼인한지 17년 되었으며, 부부 사이에 1녀1남(18세, 16세)이 있다. 행위자와 피해자는 7개월 정도 별거하였다가 재결합한 경험에 있는데, 행위자의 폭력은 재결합 무렵에 시작되었으며 본 건 이전에 2회의 폭력이 있었다. 2016년 7월 사건당일, 행위자는 모친의 칠순잔치를 마치고 아직 친지들이 돌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빨리 집으로 돌아가자고 한 피해자에게 화가 나 집에 와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폭력을 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가 반격하는 것을 보고 행위자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행위자의 가정폭력이 인정되어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6개월간 보호관찰 및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병과 받아 본소에 상담위탁되었다.

사건 이후 부부는 거의 대화를 하지 않고 지내고 있었으며, 대화를 하더라도 거친 말로 하는 등 매우 냉담한 상태였다. 행위자는 피해자가 결혼 1주일 만에 이혼하자는 이야기를 하였다면서 왜 자기와 결혼하였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였다. 행위자는 피해자의 needs로 행위자의 월급을 모두 피해자에게 주고 행위자는 용돈을 받아 쓸 것과 친정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기라고 꿈으면서도 그를 수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해자는 행위자가 꿈은 피해자의 needs가 진정 자신이 바라는 바는 아니라고 하였지만, 월급을 주지 않으니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였다.

행위자와 피해자 모두 이혼을 고려하고 있었지만, 피해자가 먼저 이혼의사를 접고 노력해보겠다는 입장으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행위자가 늦게 귀가하면 문자메시지도 보내고 식사를 함께 하자고 대화를 시도하는 노력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기간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냉랭한 태도가 지속되었다. 피해자는 행위자의 분노조절장애와 폭력, 과음을 갈등원인으로 꼽았는데 행위자의 상담이 진행되면서 태도가 유연해진 것을 확인하였고 평가하고 행위자의 분노감정을 더욱 완화시켜 줄 것을 희망하였다.

상담초기에 행위자는 자신의 폭력사실을 인정하고 법적 책임을 다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상담에 참여하면서 억울한 감정을 상당부분 해소하고 피해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종결상담 시 점검 결과, 행위자는 피해자와 화해하였고, 생활비도 제대로 지급하고 있었다. 양가 부모와의 관계는 여전히 과제로 남았지만 당분간 부모는 각자 찾아뵙고 도리를 다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장모모시는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어 행위자가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동안 행위자 관찰 결과, 하기 싫은 일을 선택하라고 하기는 쉽지 않았고 가능성도 없는 일로 판단되어 행위자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면 경제적 지원 등을 우선 수용하는 쪽으로 합의할 것을 권유하고 상담을 종결하였다.

사건번호 2017형 제1**** 수원지방법검찰청 안산지청

상담진행

행위자	개별상담 2회, 음주문제상담 3회, 집단상담 10회,
피해자	전화상담 1회 등 총 16회 실시

상담기간

2017. 4. 27. ~ 2017. 8. 28.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와 13년간 사실혼으로 지냈지만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사실혼관계를 해소한 후 혼자 고시텔에서 지내고 있다. 행위자는 사실혼 해소 후에도 한 달에 1~2회 피해자의 집에 가고 잠도 자는 등 교류를 가졌는데 2017년 2월 사건당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진입을 시도하는 가정폭력을 하여 수원지방법검찰청 안산지청으로부터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20회, 40시간)을 받았다.

행위자는 처음에는 안산가정폭력상담소로 상담위탁 되었지만 행위자가 서울 영등포구의 고시텔에서 거주하게 되어 본소로 연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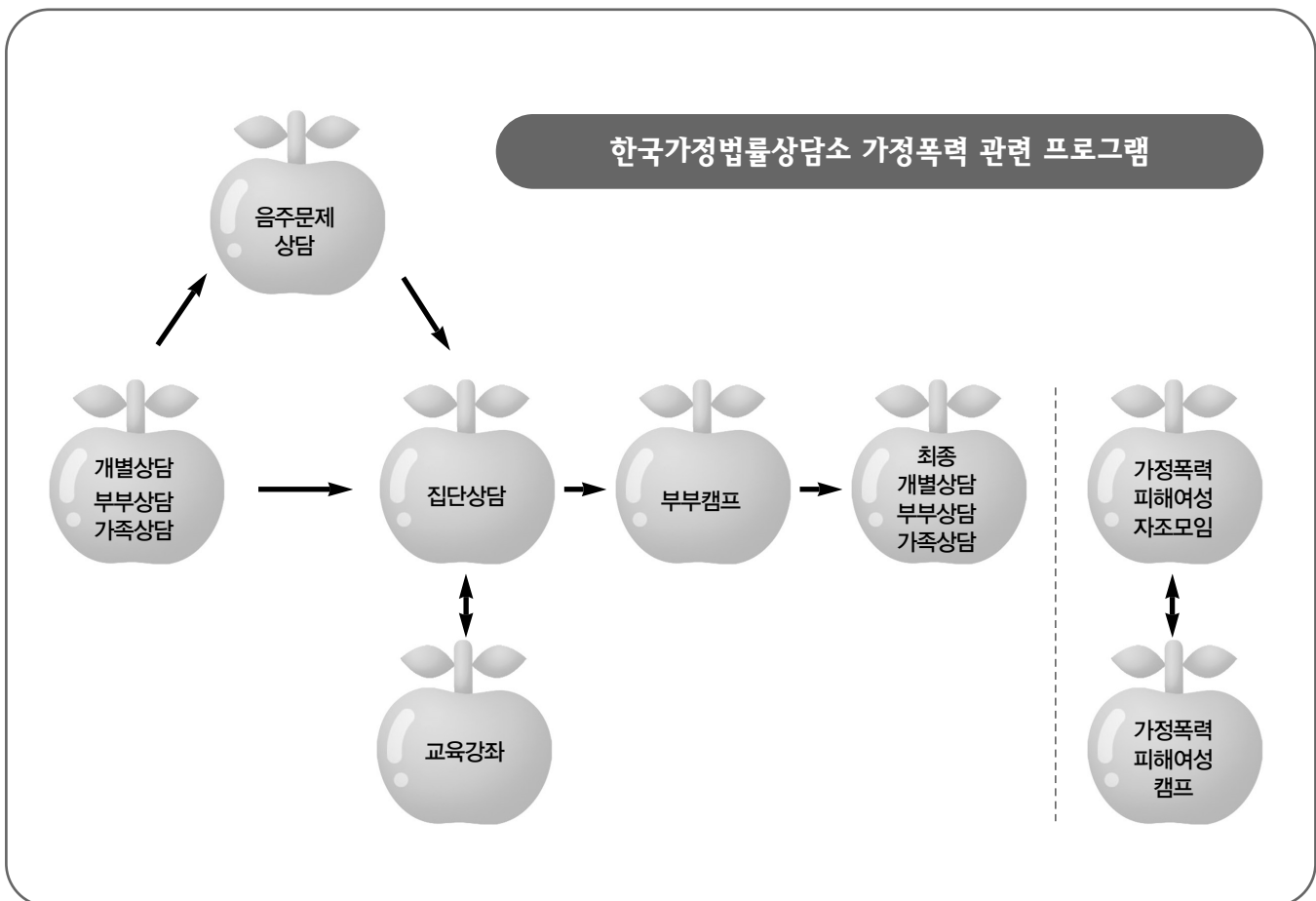
행위자는 초상담에서 자신은 단지 피해자 집 문을 두드렸을 뿐이고 주거침입을 하지는 않았다고 하면서도 상담에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하였다. 행위자는 막내로 부모가 돌아가셨고, 누나 한 명만이 생존하여 가정적으로 외로운 처지였다. 행위자는 단순노무에 종사하여 일이 끝나면 술을 마시는 기회가 많았지만 사건 이후 절주하기로 결심하고 실천하고 있었다. 행위자는 상담초기에는 단지 법적인 제재를 이행하면 된다고 생각하였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기왕이면 적극적으로 배우자는 생각으로 진지하게 참여한 결과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하였다. 가정폭력에 대하여 이해하게 되었고, 바른 말/좋은 말에 대하여 알게 되었으며, 집단상담에서 비슷한 어려움이 있는 구성원들의 사례와 강의로 심적 치유를 받았다고 하였다. 행위자는 피해자와의 사

실혼 중 잘못된 점으로 상대방에게 무관심했고, 경제적으로 무능했으며, 술을 많이 마신 점 등을 꼽을 정도로 자신과 피해자의 입장을 객관화하고 이해하게 되었다. 상담기간 중 자신의 변화로 절주를 꼽았으며, 5년 후를 목표로 새로운 일을 구상하고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등 향후 인생 진로를 계획하는 계기를 맞이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행위자가 찾아온 적이 없으며, 폭력도 재발되지 않았고, 신변에 위협을 느낀 일도 없다고 하였지만 향후 행위자와 재결합의사는 없다고 하였다.

행위자는 성실하게 상담에 참여하였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였다. 행위자는 본소 프로그램에 따라 15회에 걸쳐 총 40시간을 이수하고 상담을 종결하였으며, 폭력에 대한 의식과 태도가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

박소현 법률구조 2부장





인·터·넷·상·담

Q

저와 교제하던 여자친구가 임신을 하였습니다. 여자친구는 임신을 하자 사실 자신은 결혼을 한 적이 있으며 남편과는 같이 산 기간이 얼마 되지 않고 남편이 오래 전 집을 나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여자친구가 저를 속인 것을 모두 용서하고 아이를 낳아 함께 잘 살기로 하였습니다. 최근 여자친구가 아이를 낳아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하려고 하였는데, 출생신고를 하면 아이의 아버지로 여자친구의 남편이 올라간다고 하여 그냥 돌아왔습니다. 주변 사람으로부터 민법이 개정되어 제가 아이의 아버지로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절차가 생겼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A

구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844조는 부의 친생자의 추정이라는 제목으로 “①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한다. ②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백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백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혼인관계가 종료된 후에 출생한 자라고 하더라도 혼인관계종료일로부터 3백일 내에 출생한 자는 민법 제846조 및 제847조에 따라 부(夫) 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 또는 자(子)를 상대로 하여 청구하는 친생부인의 소를 거친 후에야 생부가 인지(認知, 혼인 외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를 자기의 자녀로 인정하는 의사표시)할 수 있었습니다.

위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를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구민법 제844조 제2항 중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에 관한 부분은 모(母)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습니다(헌재 2015. 4. 30. 2013헌마623).

이에 따라 국회는 민법 제844조를 남편의 친생자의 추정이라는 제목으로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개정하였고, 제854조의2(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및 제855조의2(인지의 허가 청구)를 신설하여 친생부인의 소보다 간이한 방법으로 자녀에 대한 전부(前夫)의 친생추정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위 조항의 적용 대상은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이므로, 혼인 중에 임신한 것이 명백한 혼인관계가 종료되기 전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는 개정된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에는 여자친구가 전남편을 상대로 민법 제846조 및 제847조에 따른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고 친생부인판결을 받은 후에 귀하가 자녀를 인지할 수 있습니다.

김민선 변호사

핑거스미스

세라 워터스 장편소설, 최용준 옮김
열린책들, 2016년

내가 가지고 있는 영국의 이미지는 대체로 빅토리아 시대의 그것인 듯하다. 제국주의라는 짙은 그림자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그렇고 찰스 디킨스와 브론테 자매의 소설이 남긴 이미지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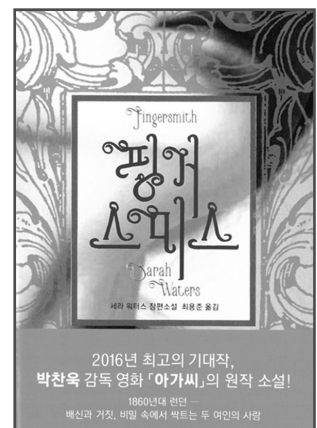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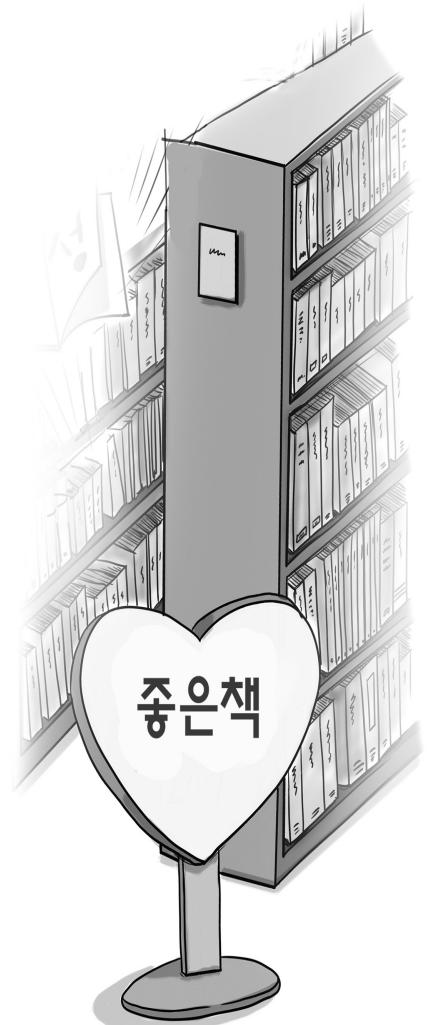
영국은 나폴레옹 전쟁 이후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강대국이자 세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했다. 세계 최초로 도시화·산업화된 사회라는 새로운 지위를 얻게 된 이 시기의 영국에는 남다른 풍요와 활력, 자신감이 넘쳤고, 이러한 에너지는 해외로 뿜어나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으로 표현되었다. 한편 영국 내에서는 급격한 사회변화와 더불어 격렬한 지적 논쟁이 일어났으며, 산업혁명이 가져다준 새로운 풍요와 함께 이전 시대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종류의 도시빈민이 함께 생존하게 되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수많은 모순 가운데 하나였으며, ‘올리버 트위스트’나 ‘두 도시 이야기’ 같은 찰스 디킨스의 작품들이 이 시대의 이러한 분위기를 잘 보여준다.

『핑거스미스』는 빅토리아 시대를 배경으로 흡사 찰스 디킨스를 떠올리게 하는 작품이다. 작가 세라 워터스는 레즈비언 역사 스릴러 소설로 영미권에서 높은 평가와 더불어 많은 인기를 얻으며 주목받는 작가이다. 『핑거스미스』는 작가의 세 번째 작품으로 2002년에 발표되었으며 추리소설로는 드물게 부

커상 – 우리나라 작가 한강이 수상한 ‘맨부커상’의 전 이름이다 – 후보에 올랐고 영국 추리작가협회의 역사소설 부문상을 수상, 그 해의 <올해의 책>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핑거스미스’는 소매치기를 가리키는 속어이다. 태어나자마자 고아가 되어, 소매치기들 틈에서 자란 수 트린더, ‘젠들먼’이라고만 알고 있는 인물에게 조종당하는 수는 부유한 상속녀인 모드에게 젠들먼이 구혼하는 일을 돕기 위해 시골 영지에 있는 모드의 하녀로 들어간다. 이러한 기본 플롯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이 책은 풍요로운 산업혁명의 뒤편에 놓인 소매치기와 같은 도시빈민들 그리고 도덕적으로 보였던 빅토리아 시대의 어두운 사회상을 흥미롭게 묘사하고 있다는 평을 얻었다. 200자 원고지 3,500매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800페이지가 넘는 장편의 이야기가 끝까지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2016년 박찬욱 감독이 각색하여 <아가씨>라는 영화로 만들었으며, 박찬욱 감독은 이 영화로 제71회 영국 아카데미 외국어영화상을 수상했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를 좋아하는 지라 영화 <아가씨>를 재미있게 보고 원작을 보고 싶어 책을 읽었는데, 기본 열개는 같지만 배경과 진행이 전혀 달라 아주 흥미로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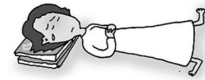
이 숙 현 편집부장



결혼과 인생(181)

장차현실의 만화일기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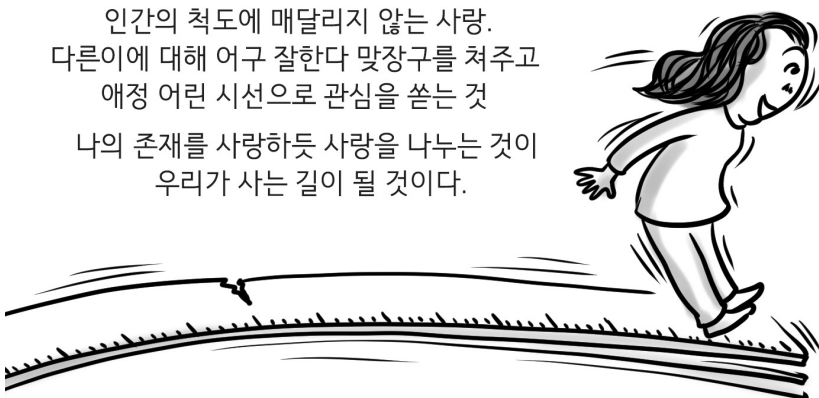
사 랑



글 | 그림 | 장차현실



인간의 척도에 매달리지 않는 사랑.
다른이에 대해 어구 잘한다 맛장구를 쳐주고
애정 어린 시선으로 관심을 쏟는 것
나의 존재를 사랑하듯 사랑을 나누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 될 것이다.



임상실습 소감문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실습을 마치고

상담소는 법교육의 일환으로 법학과, 사회복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생, 사법연수원생 등에게 다양한 임상실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본 상담소에서 2주간 임상실습을 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소감을 실는다.

강 정 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의 2주간 실무수습 과정을 거치며 무료법률상담을 받으러 온 내담자들이 상담을 받는 것을 참관하고, 사이버 상담에 답변을 달고, 소송구조 케이스의 기록을 검토하는 등 기관 내에 일어나는 많은 일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아직 법을 배운지 1년밖에 되지 않았고 가족법을 수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상담소에서의 실무수습 과정을 잘 마칠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되었지만, 로스쿨에 와서도 잊지 않았던 제 꿈인 법률 구조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 기쁜 마음으로 실무수습에 참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자란 부분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고, 그 뿐만 아니라 법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많이 배웠습니다. 그간 학교에서 채울 수 없던 실무적 감각을 키우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사이버 상담에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서 그런지 많은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문의를 하기까지의 고민과 긴급함이 묻어나는 글들을 읽으며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그 사안의 법률 쟁점을 파악하고, 주요 내용을 리서치하고, 질문자의 관점을 고려하여 글을 정리하며 실무감각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소장 과제와 기록 검토를 할 때에는

팀원들과 함께 일하며 팀워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소장 과제는 양친자관계존재확인 소에 관한 것이었는데 사안이 흔하지 않아 과제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함께 일했던 3명 모두 로스쿨 1학년생들이라 서로에게 많이 의지하고 도움을 주며 많이 배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함께 이뤄낸 것들은 저 혼자서 해낼 수 없을 값진 것이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에는 가족법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상태였지만, 마지막 날에 이를 즈음에는 여러 사안에 대해 알게 되어 스스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스스로 운이 좋았다고 생각되는 점은 같이 일했던 로스쿨 실무수습생들과의 팀워크가 좋아 2주가 너무 짧다고 느껴질 만큼 즐겁게 수습과정을 마쳤다는 점입니다.

저희의 부족한 과제에도 아낌없는 칭찬과 더불어 학교에서 배울 수 없던 실무에서 중요한 점을 세세히 가르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후에 법조인이 되어서도 법률 구조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에 봉사하며 살겠다는 의지를 다잡을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최 다 슝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부 전공인 사회복지학과 법학을 함께 할 수 있는 진로를 찾을 수는 없을까 생각하던 중에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알게 되었고, 실무수습에 지원하였다.

2주간 전화 상담, 접수 안내, 상담 참관, 소장 과제 작성, 법률 문서 작성, 행위자 집단상담참관 등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을 체험해 볼 수 있었다. 상담 참관을 통해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찾아오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느낄 수 있었다.

내담자 중에는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이혼을 준비하기 위한 상담을 받기 위해 오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시급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도 있었다. 이런 분들에게 상담소에서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지켜볼 수 있었다.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법률적인 해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상담위원들과 변호사님들을 보면서 법조인으로써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실질적으로 줄 수 있는지 배울 수 있었다.

그리고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가해자 집단상담이나 피해자 자조모임 등의 사회복지 프로그램들도 진행되고 있었는데 가해자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한 번 참여할 수 있었다. 행위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심경의 변화를 많이 느꼈다고 생각했는데 상담선생님과 함께 피드백을 하면서 처음부터 행위자들이 이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상담을 통해 3회기 만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이는 매우 긍정적이지만 사실 이 변화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는 분들도 많다는 걸 알게 되었다. 사회복지를 전공한 나에게는 집단상담에 참관한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다.

또한 소장 과제, 준비서면 과제 등을 하면서 실무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었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을 공부하면서 마냥 어렵게만 느껴졌었고, 법학을 전공으로 택한 것이 옳은 선택이었나 하는 고민을 많이 했다. 그런데 실무수습을 통해 실제 사건들을 접하고 소장을 작성하고, 준비서면 과제를 하면서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이 구체화되면서 이해되는 느낌을 받았다.

특히 가족법은 수강하지 못하고 실무수습을 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장님과 변호사님, 법무관님들께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정말 실무에서 어떤 것들이 문제되는지,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등을 알려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서 계속 질문도 많이 하고, 틀리는 것도 있었는데 항상 친절하게 설명해주시고 잘하고 있다고 다독여주셔서 자신감도 생기고 동료 실습생들과 함께 고민해보면서 즐겁게 과제들을 수행해나갈 수 있었다.

진로와 적성에 대한 고민으로 힘들었던 내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의 실무수습은 많은 것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기회였고, 덕분에 계속 로스쿨 생활을 해나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최 하 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고 첫 실무 수습이었기에 한국 가정법률상담소에서의 2주 간 하루하루가 참 설레고 새로웠습니다. 상담소에서는 전반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하는지를 배우고 상담소에서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업무들을 체험해볼 수 있었습니다.

우선 직접 전화 상담, 접수 안내, 온라인 상담 등을 하였습니다. 아직 법적 지식도 부족하고 가족법 과목도 수강하기 전이어서 과연 제가 이 모든 일들을 무사히 해낼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특히 전화를 받을 때는 즉각적으로 대답을 해야 했기 때문에 긴장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전화를 받거나 온라인 과제 등을 받으면, 상담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책임감이 생겨서 답을 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고 그 덕에 공부도 많이 되었습니다. 온라인 상담의 경우에는 법무관님들이 첨삭을 꼼꼼하게 해주셔서 법적 소양뿐만 아니라 상담 스킬까지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상담소 및 가정법원에서 상담 참관을 하였습니다. 가정법원에서는 거의 하루 종일 상담 참관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실무적인 요소들을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어떤 문제에 대한 답만 찾는 것이 아니라 절차나 방법, 그리고 오직 실무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구체적인 팁들까지도 보고 들을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법조인에게 법적 지식뿐만 아니라 공감 능력, 상담 능력 등 사람을 대하는 기술이 중요하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소송 기록들을 검토하고, 소장을 작성 하였습니다. 실제 기록들을 보면서 다른 실무수습생들과 함께 분노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면서, 사회적 약자들이 처한 열악한 환경에 대해 고찰하였습니다. 소장 작성 과제로 받은 사례는 매우 특이하여 다함께 답을 찾아가는 과

정에서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비록 처음이라 미흡한 점도 있었지만, 틀리면서 부족한 점에 대해 배울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앞으로도 더욱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2주 동안 정말 색다른 경험을 하였습니다. 눈물 흘리는 내담자를 보면서 저 스스로도 사회적 약자들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였고, 법적 소양의 중요성도 다시금 느꼈습니다. 상담소에서의 경험은 예비법조인으로써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많은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도움을 받기 위해 상담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가사문제에 있어서 이혼 및 가정폭력 등이 보편적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속, 양육, 후견 등 훨씬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막힘없이 도움을 주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이 사회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항상 막연하게 사례를 듣다가, 내담자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실제 기록들을 보면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함께 공감하고 고민해볼 수 있어서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실무 수습을 한 친구들에게 너무 고맙습니다. 좋은 친구들을 만난 덕분에 모든 과제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고, 실무 수습 기간이 즐거움과 웃음으로만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담소에 있는 동안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업무와 과제들을 꼼꼼하고 친절하게 지도해주셨던 상담소 선생님들, 변호사님, 법무관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담·소·소·식



마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본소 방문

지난 2월 20일 서울마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최기옥 경장, 이성규 경장, 손현미 순경이 본소를 방문하여 관배희 소장과 면담하고 조경애 법률구조 제1부장과 본소의 법률구조에 대해 설명을 듣고 상담 연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교육부, 한부모가정 일일교육 및 김병후 원장의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본소 교육부에서는 2월 8일 「한부모 가정을 위한 일일교육」을 실시하였다. 청소년 비혼모 시설인 애란원에서 진행

된 이번 교육은 시설 입소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한부모와 시설종사자 등 총 35명이 참여하였다. 첫째 시간은 한부모 가정이 알아두어야 할 법률강의로(강사 : 조은경 본소 상담위원) 가족관계등록법, 인지, 양육비이행청구, 친양자, 성·본 변경, 부양, 성년후견 등 한부모 가정이 궁금해 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강의가 끝난 후에는 강사와의 개별상담을 통해 가족법 관련 문제 외에도 채권채무, 파산면책 등 15건의 법률상담이 이루어졌다. 또한 소송구조가 필요한 참가자들에게 신청 방법을 안내하였다. 둘째시간은 한부모를 대상으로 무용동작 치료가 진행되었고(강사 : 최정아 트리인마인드 소장) 터치를 이용한 자기 돌봄과 아이와 상호작용 하는 법을 배우고 불편함과 위험에서 그만, 멈춤 이라고 말하며 짝을 이루어 돌봄과 배려를 경험하였다. 이를 통해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아이와 자연스럽게 교감하는 법을 익히도록 하였다.

참가자들은 현재 처한 상황에 맞는 법률교육과 상담을 받을 수 있어 좋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상담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든든하고 위안이 되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오는 3월 30일~31일에는 1박 2일로 용인에버랜드에서(후원 :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삼성생명) 비혼모 가정을 위한 워크숍이 진행될 예정이다. (관련사진 2면)

그리고 지난 2월 22일에는 김병후 원장(본소 이사, 김병후신정정신과)이 “마음의 상처”라는 주제로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를 진행하였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30대부터 70대까지 7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강의에서는 마음의 상처 중 특히 남자의 상처를 주로 다루었다. 생물학적 남녀의 차이, 시대에 따른 아버지 역할의 변화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참석자들은 강의를 통해 아버지를 떠올리게 되어 뭉클했다는 소감을 밝혔다. 다음 강의는 오는 3월 22일(목) “사랑은 무엇이며, 그 진화 과정은?”이라는 주제로 진행 될 예정이다. (관련사진 2면)

출장 법교육 및 본소 실습 활발

법의 생활화 운동의 일환으로 본소의 법 교육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출장 법 교육은 가족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가정폭력특례법 등을 주제로 하며, 본소 상담위원들의 상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충실한 강의로 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본소에서의 실습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출장법교육

- 2. 9. 영등포 보현의 집 노숙인 신용회복을 위한 법교육
 - 전규선 상담위원
- 2.23. 한국가족치료학회 회원을 위한 가족법 교육
 - 조은경 상담위원

- 동국대 현장실습 연수 (1/2-2/23)
 - 김예진, 김창용

- 이대 현장실습 연수 (1/2-2/28)

신재현, 허성문

가정법원 출장상담

조경애, 박소현, 조은경, 복미영, 김진영, 최수진, 박소연, 정다혜, 천다라 상담위원
유혜경, 권지연 상담위원, 김민선, 황현정 변호사, 문득현, 김동규 법무관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은 2월 28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진행한 ‘재혼가족의 재산문제 연구’에 대한 평가회에 참석하였다. 평가회에는 상담소의 조경애 부장과 김진영 상담위원, 여성정책연구원의 송효진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원인 배인구 변호사가 참석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 2월 1일에는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연수회에 참석하였고, 2일에는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였다. 7일에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조정을 하였으며, 8일에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여성가족정책사 현장재조명 : 호주제 폐지운동을 중심으로 본 가족 이슈 변화와 방향」 연구 착수자문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22일에는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의 「김선옥 교수 정년퇴임 기념세미나-젠더법학의 최근 이슈와 나아가 할 길」에 참석하였다.



● ● ● 고맙습니다

2018년 2월 자원봉사자

• 주간상담을 해 주신

강종협, 권민경, 김태주, 박소영, 박수열, 신수경,
이효재, 임주영, 전현정, 황미옥 변호사 님

• 야간상담을 해 주신

이진철 재판연구관 님
김미옥, 김소이, 이승주, 진보라, 천정환 변호사 님

• 다문화가정을 위한 영어상담을 해 주신

배선경, 사대진 변호사 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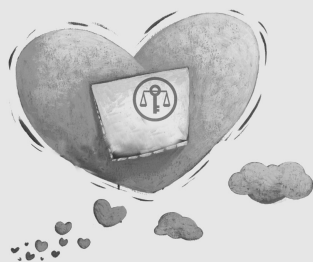
• 학생 자원봉사

구가은, 김도영, 김유진, 백다슬, 정혜진, 채서현,
최승은, 최유정, 허호재, 김소희, 김하영, 남서연,
박소연, 이민주 님

후 원

• 운영후원금을 주신 분

김용현, 천정환 님



회원이 되시려면

일반회원들은 월 5천원씩 또는 년 5만원,
평생회원은 50만원을 일시 납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밝히기를 원치 않는 분들은
아래의 구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주소가 변경된 회원은 반드시 상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농 협 317-0003-1418-11 가정법률상담소
연락처 : 780-5688 총무부

지·부·소·식

강릉지부

2월 1일~2월 25일 강릉올림픽파크에서 2018 평창동계
올림픽 임시상담소를 운영하였다. 20일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28일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대학생
대상으로 가정폭력·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구리지부

의정부지방법원 가사조정 및 형사조정을 실시하였다. 2
월 9일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경숙, 정수경, 김효경,
황은하, 장경아, 정이수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대구지부

대구가정법원에서 이혼관련 출장상담과 가사조정을 실
시하였다.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회복지원사업으로 이혼
을 고려중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개별상담 및 부모교육을
실시하였다. 2월 10일, 24일 대구가정법원 협의이혼의무상
담제 주말부모교육 '협력하는 부모' 프로그램을 실시하였
다. 정건진, 김진원, 엄요한, 김재철, 정홍욱, 도낙희, 전종
필, 이성관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송도지부

1월 26일 연수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월 9일
연수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및 연수구 청소년상담복지
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성남지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협력사업으로 이혼부부의 미성년자녀양육안내를 성남지원 4회, 광주시법원 6회 실시하였다. 성남지원 협의이혼의무상담을 5회 실시하였다. 성남시 정보문화센터, 성남중앙도서관, 관내 동주민센터 등에 상담소 홍보물을 8회 배포하였다. 2월 27일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였다. 김정혜, 송지민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수원지부

2월 5일 수원지방법원 가사조정을 실시하였다. 부설 보라상담원에서 경찰동행 가정폭력피해자 가정방문상담을 실시하였다. 한두환, 박지훈, 임용호, 강은혜, 구민혜, 한준엽, 김현수, 황미옥, 김정혜, 서정식, 박지현, 허정택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전주지부

전주지방법원 협의이혼 상담을 3회, 가사조정 1회 실시하였다. 전주지방검찰청 형사조정을 1회 실시하였다. 2월 8일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전북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무료법률구조사업에 대해 홍보하였다. 정아람, 진휘원, 임영곤, 최대일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순천지부

매주 화요일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에서 미성년자녀를 둔 부모교육을 4회, 가사조정을 2회 실시하였다.

창원·마산지부

창원지방법원 가사조정을 실시하였고, 가사조정 사례연구 회의에 참석하였다. 2월 1일, 8일, 22일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고정향, 오유경, 강재현, 전철우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2018년 1월 전국 상담통계

상담소 본부 및 전국 지부에서 2018년 1월 한 달 간 접수·처리한 총 상담건수는 12,062건으로 본부가 7,591건, 지부가 4,471건이었다. 본부는 6,983건의 법률상담 외에 화해조정 440건·소장 등 서류작성 140건·소송구조 28건을 처리하였으며, 지부는 법률상담 3,716건·화해조정 722건·소장 등 서류작성 20건·소송구조 13건을 처리하였다.

본부의 법률상담 6,983건을 사건내용별로 살펴보면, 2017년 12월에 비해 가사사건의 경우에는 친권·양육권(5.4%→6.2%), 친생부인(0.8%→0.9%), 가사절차(6.7%→8.1%), 미성년후견(0.2%→0.3%), 성년후견(1.5%→1.7%)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한편,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임대차(0.2%→0.4%),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성폭행(0.0%→0.1%)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본부의 법률상담 6,983건을 상담방법별로 살펴보면, 면접상담 970건(13.9%), 전화상담 5,751건(82.3%), 통신 및 인터넷상담 262건(3.8%)이었다.

2018년 2월 본부 상담 통계

총상담 7,350			
법률상담 (6,760)			
면접	전화	통신	지상
931	5,551	277	1
화해조정		소장 등서류작성	소송구조
491		76	23

* 2018/2 인터넷을 통한 법률정보제공(본부) 54,479건

지 부	총상담	법률상담					합계	화해조정	소장 등 서류작성	소송구조
		면접	전화	통신	서신	기타				
서울(본부)	7,591	970	5,751	262			6,983	440	140	28
강릉 (033) 652-9555	78	50	23				73	2		3
구리·남양주 (031) 551-9976	269	33	65				98	171		
군산 (063) 442-1560	116	25	39				64	50		2
대구 (053) 745-4501	488	207	46	10		출장 23	286	202		
대전 (042) 520-5258	195	30	161				191		4	
동해 (033) 535-0188	82	19	63				82			
목포 (061) 273-2514	165		165				165			
부산 (032) 667-2314	293	64	226				290	3		
성남 (031) 707-6661	273	112	95	1		출장 20	228	40	3	2
송도 (032) 834-1369	98	16	58				74	20	2	2
수원 (031) 243-4600	391	126	153	1		출장 29	309	82		
순천 (061) 753-9910	166	53	111				164	1		1
안동 (054) 856-4200	76	11	53				64	12		
익산 (063) 851-5113	153	45	108				153			
인천 (032) 865-1120	73	40	31				71	1		1
전주 (063) 244-2930	135	54	56	21	2		133		1	1
정읍 (063) 535-3705	102	22	51				73	29		
제천 (043) 644-5690	53	13	40				53			
충구 (02) 2238-6554	182	141	40				181			1
진주 (055) 746-7975	137	31	61	1			93	44		
창원·마산 (055) 261-0280	307	153	126				279	28		
청주 (043) 257-0088	193	79	89				168	15	10	
춘천 (033) 257-4688	231	45	17			출장 169	231			
태백 (033) 554-4004	38	29	9				38			
평택·안성 (031) 611-4251	124	29	51			출장 22	102	22		
포항 (054) 283-7555	53	12	41				53			
지부총상담	4,471	1,439	1,978	34	2	출장 263	3,716	722	20	13
총 상담	12,062	2,409	7,729	296	2	출장 263	10,699	1,162	160	41

** 2018/1 인터넷을 통한 법률정보제공(본부) 59,995건

백인변호사단 소·송·구·조

완결된 소송구조 사건

자녀를 학대한 친모의 친권을 상실시키고 위탁부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

법률구조 2017-258

담당 : 문준석 변호사

사건명 : 친권상실 및 미성년후견인선임

내용 : 사건본인인 청구인(여, 5세)은 상대방(여, 31세)의 친딸이다. 사건본인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된 김○○은 5년 전 사건본인의 양육을 위탁받은 위탁부로 현재까지 배우자와 함께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다. 상대방은 미혼모로, 미혼모 시설에서 사건본인과 사건본인의 친언니를 양육하던 중 사건본인 친언니를 방임하여 아동학대로 구속되었다. 상대방은 2014년 출소 후 친권포기의사 관련 연락을 제외하고는 위탁부모와 연락을 두절하였다. 사건본인은 생후 8개월부터 위탁부모에게 위탁 양육되었고 위탁부모를 친부모로 알고 있다. 위탁부모는 사건본인을 각별한 애정으로 키워왔고, 계속하여 사건본인을 양육할 의사가 있다. 사건본인의 장래 성장과정에서 상대방의 도움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에 위탁부는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데 필요한 법적 문제해결 및 원만한 학교생활의 지원을 위하여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이 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17. 12. 28.)

1. 상대방은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을 상실한다.
2.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으로 김○○을 선임한다.
3. 미성년후견인은 이 심판 확정일부 2개월 이내에 이 법원에서 실시하는 후견인교육을 이수한 후 교육이수확인

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미성년후견인은 2018. 7. 31.을 시작으로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매년 7. 31.까지 후견사무보고서(기준일: 매년 6. 30.)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아내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지급 판결

법률구조 2017-284

담당 : 임경표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원고(여, 31세)와 피고(남, 30세)는 2016년 5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이다. 피고는 혼인기간 중 수시로 원고에게 욕설을 하고 원고를 폭행하였다. 2016년 12월경 원고는 피고의 폭행으로 양쪽 눈에서 피가 나고 얼굴이 심하게 멍드는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는 이런 원고를 병원에 데리고 가기는커녕 방에 감금하였다. 2017년 5월경 피고는 상견례 전날에도 원고를 폭행하였고, 원고는 얼굴에 입은 상해를 가리기 위하여 모자를 쓴 채 상견례에 참석하여야 했다. 특히 2017년 7월경 피고는 원고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며 발로 원고를 수십 차례 폭행하였고, 원고는 이로 인해 안와에 타박상 등 상해를 입었다. 피고는 혼인기간 중 경제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고 원고에게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부산가정법원 2018. 1. 11.)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명의도용을 당해 발생한 채무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17-330

담당 : 이혜민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63세)은 친하게 지내던 이웃 동생과 20여 년 동안 계 등의 금전거래관계를 지속해왔다. 하지만 신뢰했던 동생이 인감과 주민등록증을 빌려가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고 잠적하면서 신청인은 채무를 지게 되었다. 이에 신청인은 일용직을 하며 채무를 변제하려 했지만 소득이 적어 어려웠고, 9년 전 신청인의 배우자가 뇌출혈로 식물인간 상태가 되면서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다. 이후 배우자의 명의로 명함, 판촉물 소매업을 시작하기도 했지만, 소득이 적어 중단하게 되었으며, 사실상 폐업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현재 신청인은 배우자의 간병 때문에 경제활동을 할 수 없고, 매달 배우자의 입원비와 약제비가 고정적으로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신청인 자녀의 소득 월 100만 원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청인이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기 위하여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17. 12. 15.)

채무자를 면책한다.

**남편의 혼외자들이
아내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된 것을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을 통해 바로잡음**

법률구조 2016-449

담당 : 강영신 변호사

사건명 : 친생자관계부존재

내용 : 원고(여, 66세)와 피고1(여, 34세), 피고2(여, 32세)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모녀 관계로 등재되어 있다. 원고는 1971년 8월경 소외 망 이○○와 혼인하였으나 경제적인 문제로 1976년경 별거를 시작하여 1987년 4월 이혼하였다. 소외 망 이○○은 별거 중 다른 여성과 동거하였고, 그 사이에서 출생한 피고1, 피고2를 원고의 자녀로 출생신고 하였다. 원고는 소외 망 이○○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피고들이 자녀로 등재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원고는 현재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힘겹게 생활하고 있는데,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가 많아 임대아파트 입주 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안내를 받았고, 같은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신청이 반려되었다. 이에 원고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잘못 등재된 친생자 관계를 바로잡아야겠다고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전주지방법원 2017. 6. 13.)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와
남편의 폭행으로 인한 이혼 화해권고결정**

법률구조 2017-21

담당 : 임소진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원고(여, 49세)와 피고(남, 52세)는 1994년 7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다. 시모는 원고가 딸을 낳았다는

이유로 원고를 구박하였고 원고가 자녀를 낳을 때마다 양육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시모는 원고가 시모의 돈을 훔쳤으며 누명을 씌우기도 하였다. 피고 또한 원고를 무시하고 매일 술을 마시며 원고에게 폭언을 하였다. 2016년 9월경 셋째 아들이 원고의 목을 조르고 원고를 발로 차는 등 마구 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원고는 피고와 자녀들이 원고를 무시하고 아들에게 폭행까지 당하고 나니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두려워하고 있다. 이에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춘천지방법원 2017. 7. 31.)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5,000만 원을 2017. 7. 17.까지 지급하였고, 원고는 이를 확인한다.
3.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2항 기재 금원을 모두 지급받는 즉시 춘천지방법원 2017즈단00호 부동산가압류 신청 사건을 취하하고 그 집행 해제 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
4.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5.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다.
6.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7. 원고와 피고는 모두 향후 당사자 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8.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자녀 출산 후 가출한 친모의 친권을 상실시키고
외조모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

법률구조 2017-112

담당 : 정상수 변호사

사건명 : 친권상실 등

내용 : 청구인(여, 72세)은 상대방(여, 47세)의 친모이며, 사건본인(남, 10세)의 외조모이다. 상대방은 2006년 10월경 사건본인을 출산하고 3개월 후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을 맡겨둔 채 가출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고령의 나이로 사건본인을 홀로 양육하였다. 청구인은 경제 활동이 불가능해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데 육체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청구인은 사건본인에 대한 법적인 권리마저 없어, 사건본인의 보험이나 저축 등에 대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건본인에 대한 법적 보호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상대방은 가출 이후 양육비를 보태는 등의 노력도 하지 않았고 연락조차 되고 있지 않아, 사건본인이 겪는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에 청구인은 더 이상 상대방이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워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이 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17. 6. 26.)

1. 상대방의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을 상실한다.
2.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을 선임한다.
3. 미성년후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사건본인 명의의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및 상속의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 또는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미성년후견인은 2017. 9. 30.까지 2017. 5. 31.을 기준으로 하는 사건본인의 재산목록과 사건본인의 신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미성년후견인은 2018. 7. 3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년 7. 31. 사건본인에 대한 후견사무보고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명의로용으로 인해 채무가 발생하여
생계가 어려운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17-157

담당 : 김소이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69세)은 1972년경부터 1992년경까지 30여 년간 건설현장에서 잡부로 일하면서 경제적으로 조금 부족해도 가정을 생각하며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 그런데 지인이 신청인 명의를 이용하여 금융권에서 대

출을 받아 사용하였고, 해당 채무를 상환하지 않고 방치하여 과도한 이자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극심한 독촉에 시달리게 되었고, 배우자와도 잦은 가정불화를 겪게 되었다. 이후 신청인은 간헐적으로 일용근로를 하며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닥선 이들이 접근하여 자신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 큰돈을 주겠다고 하였다. 이 말에 혹한 신청인은 그들이 시키는 대로 제적등본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주었으나 이는 알고 보니 공문서위조 및 사기에 해당하는 범죄였고, 2008년경 2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이후 신청인은 2010년 2월경 출소하였으나 이혼하게 되었고, 고령과 건강상 문제로 더 이상 일용근로조차 하지 못해 채무지급불능상태가 되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받아 월 평균 수급비 약 65만원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약 9,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채무를 상환하는 것은 사실 상 불가능하기에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기로 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18. 2. 9.)
채무자를 면책한다.

양육비부담조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전남편의 직장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법률구조 2017-177

담당 : 정영근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내용 : 채권자(여, 39세)와 채무자(남, 39세)는 2009년 6월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여, 8세)을 두었지만, 이후 2016년 10월 협의이혼을 하였다. 이혼 당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 사건에 따른 이혼신고가 되면,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비로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800,000원을 매월 20일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다. 하지만 채무자는 위와 같은 내용의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양육비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채무자는 기다리라는 답변만을 할 뿐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권자는 수입이 없어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되어 도움을 받고 있다. 채권자는 양육비부담조서 정본에 기하여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인천가정법원 2017. 8. 22.)

채무자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별지 압류채권 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20일에 위 채권에서 별지 청구목록 기재의 양육비 상당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아내와 자녀들을 폭행하고 오랜 기간 외도한 남편에 대한 이혼 화해권고결정

법률구조 2017-184

담당 : 김영길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70세)와 피고(남, 81세)는 1973년 10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다. 피고는 1975년경 부정행위를 하여 혼외자를 낳았다. 원고와 피고가 피고의 형제 집에서 살고 있을 때,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형제들에 대한 험담을 한다고 오해하여 원고를 폭행하였다. 또한 피고는 자녀를 교육한다는 명목으로 자녀들을 수시로 폭행하였다. 피고는 1973년 혼인 당시 직업이 없었고, 피고의 형제들이 마련하여 준 배를 이용하여 고기를 잡거나 선주로 경제활동을 하였다. 피고의 수입은 모두 피고의 형제가 관리하였으며 혼인기간 중 원고는 피고에게 생활비나 양육비를 지급 받은 적이 없다.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 폭행 등을 견디지 못하여 2명의 자녀를 데리고 대구에 있는 친정집으로 나오게 되었다. 1977년경 피고가 원고를 찾아와 소란을 피운 일이 있었으나, 그 후 다시 찾아오는 일은 없었다. 피고

는 원고의 가출 이후 계속하여 다른 여성과 동거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부산가정법원 2017. 8. 8.)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무리한 대출로 남편을 개인회생하게 만든
아내와의 이혼 조정**

법률구조 2017-207

담당 : 윤길현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원고(반소피고, 남, 45세)와 피고(반소원고, 여, 41세)는 2003년 5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1(남, 13세), 사건본인2(남, 11세)를 두었다. 2013년 경 피고는 원고 및 다른 가족의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아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 피고는 경영악화로 어린이집 처분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독단적으로 부동산 매입을 추진하여 대출채무를 증가시켰다. 또한 피고는 원고와 상의 없이 당시 거주하던 집의 전세보증금까지 유용하였다. 원고는 현재 피고가 발생시킨 1억 7천여만 원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다. 이에 원고는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부산가정법원 2017. 10. 31.)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피고(반소원고)를 지정한다.
3.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7. 11. 1.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되기 전 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5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4. 원고(반소피고)는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접할 수 있다.
가.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 10:00부터 18:00까지

나. 매년 추석과 설날의 각 전날 18:00부터 명절 당일 18:00까지

다. 면접교섭 장소는 원고가 지정한 곳으로 정한다.

5.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6. 원고(반소피고)는 나머지 본소청구를, 피고(반소원고)는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포기한다.

7.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생활비로 인해 발생한 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17-303

담당 : 김상군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61세)은 22세에 배우자와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배우자와 농산물 도매사업을 함께 꾸려나갔다. 그러나 해당 도매사업이 부도가 나 생활이 어렵게 되자 신청인은 경제 갈등 등의 이유로 이혼을 하였다. 하지만 배우자와 다시 재결합 하였고, 이후 시부모님 집에서 생활하였다. 그런데 1986년경 배우자가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가정형편이 매우 어려워지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신청인의 시어머니마저 질병을 앓게 되면서 병원비를 비롯한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었고, 신청인은 신용카드 및 대출 등을 통해 이를 충당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부동산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소득활동을 하였으나 심근경색, 고혈압, 뇌졸중이 발병하면서 퇴직을 해야만 했다. 또 다시 경제난에 시달리게 되자 신청인은 대출을 받게 되었고, 그 이자를 갚기 위해 간헐적으로 가정부 일용근로를 하였다. 그러나 소득이 너무 미미하여 채무상환까지는 역부족이었다. 이후 신청인은 채무를 갚기 위해 2005년경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여 매월 약 17만원씩 상환을 하였으나 고령 및 건강악화로 인해 얼마 납입하지

못하고 지급불능상태가 되었다. 현재 신청인은 소득이 전혀 없으며, 25개월째 월세를 지불하지 못해 임차보증금 1,000만원도 모두 소진하여 임대인으로부터 독촉 및 이사 강요를 받고 있다. 이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기로 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17. 10. 31.)

채무자를 면책한다.

도박과 빚으로 아내에게 고통을 준 남편에 대한 이혼 화해권고결정

법률구조 2017-312

담당 : 조계창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72세)와 피고(남, 75세)는 1971년 12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다. 피고는 결혼 이후 도박을 하여 그로 인한 빚을 지게 되었고, 열심히 일해서 마련한 단독주택에 압류가 들어와 간신히 은행 대출로 막은 적도 있다. 또한 집, 가게의 값비싼 물건을 담보로 도박을 계속했고, 돈을 빌려서까지 도박을 하였다. 이후 새 집을 마련하였는데 도박 빚의 담보를 우려하여 원고 명의로 집을 구매하자 이를 이유로 원고를 계속하여 괴롭혔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고의 사업장 거래처에서 자신이 돈을 수금해 쓰기도 하였고, 원고를 협박하여 원고가 사업장에 나가지 못하게 한 뒤 수익을 자신이 사용하기도 하였다. 결국 원고는 직원 월급, 임대료 등을 지급하지 못해 사업장 문을 닫게 되었다. 이후에도 피고는 갓은 욕설과 함께 “집에 불을 지르겠다”, “도끼로 머리를 쪼갬다”고 원고를 협박하여 집문서와 인감을 건네받아 집을 처분하고 도박으로 탕진하였다. 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별거 이후 막내딸 결혼식에 찾아와 축의금을 모두 가져간 적도 있다. 이에 원고는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서울가정법원 2017. 11. 15.)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전배우자로 인해 과도한 채무가 발생하여 생계가 어려운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17-328

담당 : 남기웅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41세)은 가게에 보탬이 되기 위해 돈을 벌고 싶었으나, 전배우자는 여자가 직장을 다니면 바람이 난다고 적극 반대하였다. 2010년경부터 가게 형편이 더욱 나빠졌지만 전배우자는 신청인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유흥비로 사용하였다. 그렇게 발생한 채무원금이 1,500만 원에 달하였으나 전배우자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고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총 채무는 3,300만원에 육박하였다. 뿐만 아니라 전배우자는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하여, 신청인은 앞니 3개가 빠지거나 부서지고, 갈비뼈에 금이 가는 증상을 입었다. 이런 잦은 폭행으로 더 이상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 신청인은 2014년 9월경 이혼을 하였고, 전배우자가 자녀들을 키우게 되었다. 이후 신청인은 전배우자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소득활동을 하였다. 하지만 약 1년 6개월 뒤, 전배우자가 사귀고 있던 여자를 살해하여 감옥에 갇고, 신청인은 방치된 두 자녀를 데려와 양육하면서 더 이상 채무상환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기로 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수원지방법원 2018. 2. 7.)

채무자를 면책한다.

조경애 법률구조 1부장



비혼모 가정을 위한 워크숍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등에 시달리는 비혼모 가정을 위한 강의와 교육, 심리 상담을 포함한 상담 그리고 쉽과 치유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1박2일 자녀동반 캠프

▶ 일시 : 2018년 3월 30일(금) ~ 3월 31일(토)

▶ 대상 : 자녀를 동반한 비혼모 가족

▶ 장소 : 용인 에버랜드

▶ 내용

1. 「비혼모 가정이 알아두어야 할 법률 강의 및 상담」

▷ 강의내용 : 자녀의 출생신고, 자녀의 성과 본, 인지, 양육권과 친권, 면접교섭권, 입양, 양육비 청구, 양육비 이행강제, 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가정폭력 등 한부모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딪치게 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강의 및 상담

2. 「행복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강의 및 상담」

▷ 강의내용 :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나에게 맞는 임대주택은?'이란 주제로 소득계층별 주택지원 사업과 청약통장의 활용방법, 영구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국민임대 등의 임대주택의 유형별 청약신청 방법과 절차, 주거급여, 주거바우처 등 주거복지 자원 이용과 향후 임대주택 공급 계획 등과 관련한 강의 및 상담

3. 동반 자녀들을 위한 「놀이치료」

4. 「용인 에버랜드 체험 활동」

●후원 :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삼성생명

등지교실

내 감정을 잘 느끼고 잘 전달하기 위해 점검하고(See), 해결하며(Solve), 유지할 수 있도록(Sustain) 돕는 교육강좌

▶ 일시 : 매월 둘째 목요일 오후 3시 ~ 5시 (※ 8월 휴강)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수시접수 가능)

▶ 강의 일정 및 주제

일 정	강 의 제 목	강 사
3월 8일	두려움 : 두려움! 넌 누구냐?	최영주 (HD행복연구소 수석강사)
4월 12일	수치심 : 나의 수치심은 어디에서 왔을까?	
5월 10일	감 사 : 우리 삶에 가장 강력하게 에너지를 충전시켜주는 선물같은 감정	
6월 14일	우 울 : 우울할 때 나는 어떻게 하는가?	우애령 (사회복지학 박사, 작가)
7월 12일	평 온 : 내 힘으로 평온한 감정을 유지하기	
9월 13일	분 노 : 뜻대로 되지 않아 생기는 분노를 조절하는 법을 배운다	이서원 (한국분노관리 연구소 소장)
10월 11일	평 안 : 고통 속에서도 안정된 마음을 만드는 법을 배운다	
11월 8일	열등감 : 성장과 변화로 가는 에너지	정윤경 (연세대학교 사회복지 전문대학원 객원교수)
12월 13일	자존감 : '나는 나다'	

2018년 3월 교육강좌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보기

-이혼 전 상담프로그램-

부부갈등 및 이혼에 관해 보다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숙고함으로써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상담 프로그램

▶ 대상 : 결혼생활의 어려움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남녀 (당사자 외 참여불가)

▶ 내용 : - 1단계 : 법률상담 및 이혼 관련 비디오 시청

매주 평일 상시

- 2단계 : 집단심리상담

(이혼 전 교육 1단계 참가자, 사전예약 필수)

연중 매월 둘째·넷째 월요일 오후 2시 ~ 4시

(3월 12일 / 26일)

▶ 강사 : 김명순 소장 (세은심리상담연구소)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김병후 원장과 함께하는 부부갈등과 상처 다루기-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상처받은 관계를 힐링하기 위한 방법을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알아보는 공개강좌

▶ 일시 : 2018년 1월 ~ 12월 매월 넷째 목요일 오후 3시 ~ 5시

(※ 5월, 8월 휴강)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수시접수 가능)

▶ 강사 : 김병후 원장 (정신과 전문의, 김병후정신건강의학과)

▶ 강의 일정 및 주제 (예정)

일시	강 의 제 목
3월 22일(목)	3. '사랑'은 무엇이며, 그 진화 과정은?
4월 26일(목)	4. 인간 뇌의 특성
6월 28일(목)	5.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7월 26일(목)	6. 다름과 다양성
9월 27일(목)	7. 외도에 대한 대처
10월 25일(목)	8. 분노 조절 장애
11월 22일(목)	9. 과거 관계가 부부 관계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사례들
12월 27일(목)	10. 실제 부부사례로 살펴 본 치료상담

※ 일정 및 교육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진행 상 반드시 사전접수 바랍니다.

●장 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8층 강의실(변경될수 있으므로 사전문의 요망)

●교육문의 및 신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TEL : 02-782-3601 FAX : 02-780-0485 홈페이지 : www.lawhome.or.kr E-mail : edu@lawhome.or.kr

트위터 : http://www.twitter.com/LegalAidCente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 대표전화 1644-7077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보기

-이혼 전 상담프로그램-

부부갈등 및 이혼에 관해 보다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숙고함으로써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상담 프로그램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김병후 원장과 함께하는 부부갈등과 상처 다루기-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상처받은 관계를 힐링하기 위한 방법을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알아보는 공개강좌

비혼모 가정을 위한 워크숍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등에 시달리는 비혼모 가정을 위한 강의와 교육, 심리 상담을 포함한 상담 그리고 쉼과 치유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1박2일 자녀동반 캠프

등지교실

내 감정을 잘 느끼고 잘 전달하기 위해 점검하고(See), 해결하며(Solve), 유지할 수 있도록(Sustain) 돕는 교육강좌

